

변호사시험 제도의 실행과 응시제한자의 경험을 통해 본 법학교육의 미래와 비전

일 시 | 2026. 6. 9. (화) 13:00~16:30
장 소 | 법무법인(유한) 율촌 Lecture Hall (39층)
주최 및 주관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후 원 | 법무법인(유한) 율촌



프로그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 변호사시험 제도의 실행과 응시제한자의 경험을 통해 본 법학교육의 미래와 비전

■ 행사 개요

- 일 시: 2026. 6. 9.(화) 13:00~16:30
- 장 소: 법무법인(유한) 율촌 Lecture Hall (39층)

■ 행사 일정

시 간	내 용	
13:00~13:20	개회사	홍대식 이사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축 사	노혁준 원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환영사	윤세리 명예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13:20~13:40	기조강연	Legal Education: An Essential Rule of Law Pillar in Times of Peace, Progress, or Precarity Danielle M. Conway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로스쿨 학장, 미국로스쿨협의회 회장)
13:40~15:00	발표	
	좌 장	김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발표1	The Evolving Landscape of JD Careers & Academic Success Titichia Jackson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교수, 변호사시험 및 경력개발센터장)
	발표2	한국의 변호사시험제도와 응시제한제도 관련 쟁점 김우석 변호사 (신세계푸드)
	발표3	응시제한자, 그들은 누구인가?: 변호사시험 5회 탈락자와 합격자에 대한 다차원적 실증분석 우지숙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발표4	변호사시험의 폐쇄적 구조와 유예된 삶의 문제 공두현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표5	한국의 법학 교육과 법조인력양성체계의 명암: JD advantage를 중심으로 이재협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00~15:20	Break Time	
15:20~16:20	토론	
	좌 장	김대인 원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장혜진 교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정환 변호사 (법무법인 도담)
		양필구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자
		이동근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김수연 교육부 대학학사운영과 사무관
16:20~16:30	폐회	

목 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 변호사시험 제도의 실행과 응시제한자의 경험을 통해 본 법학교육의 미래와 비전

개회사 홍대식 이사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vi
축사 노혁준 원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x
환영사 윤세리 명예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xiv

▶ 기조강연

01. Legal Education: An Essential Rule of Law Pillar in Times of Peace, Progress, or Precarity Danielle M. Conway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로스쿨 학장, 미국로스쿨협의회 회장)	1
---	---

▶ 발 제

01. The Evolving Landscape of JD Careers & Academic Success Titichia Jackson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교수, 변호사시험 및 경력개발센터장)	9
02. 한국의 변호사시험제도와 응시제한제도 관련 쟁점 김우석 변호사 (신세계푸드)	15
03. 응시제한자, 그들은 누구인가?: 변호사시험 5회 탈락자와 합격자에 대한 다차원적 실증분석 우지숙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31
04. 변호사시험의 폐쇄적 구조와 유예된 삶의 문제 공두현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5
05. 한국의 법학 교육과 법조인력양성체계의 명암: JD advantage를 중심으로 이재협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1

▶ 토 론

장혜진 교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5
김정환 변호사 (법무법인 도담)	83
양필구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자	89
이동근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99
김수연 교육부 대학학사운영과 사무관	103

개회사

홍대식 이사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개회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 변호사시험 제도의 실행과 응시제한자의 경험을 통해 본 법학교육의 미래와 비전

안녕하십니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홍대식입니다.

먼저 오늘 뜻깊은 심포지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귀한 축사를 맡아주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혁준 원장님과, 따뜻한 환영의 말씀과 함께 훌륭한 장소를 제공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윤세리 명예대표변호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멀리 미국에서 대한민국 법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기초강연을 준비해 주신 미국로스쿨협의회 회장이지사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로스쿨 학장이신 대니엘 M. 콘웨이(Danielle M. Conway) 교수님, 그리고 첫 발제를 맡아주시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참석해 주신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로스쿨의 티티시아 M. 잭슨(Titichia M. Jackson)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연구를 앞에서 이끌어주신 이재협 교수님, 연구에 함께 해주신 우지숙 교수님, 공두현 교수님, 김우석 변호사님 등 연구진 모두에게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오늘 소중한 고견을 나눠주실 토론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주하여 연구팀이 수행한 실증 연구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서, 그동안 제도적 그늘에 가려져 있던 응시제한자들의 삶과 경험을 처음으로 본격 조명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지켜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을 둘러싼 매년 반복되는 논쟁에 ‘5년 내 5회 응시 제한’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좌절해야 했던 청년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입니다. 강단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자 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협의회 이사장으로서, 저는 ‘오탈자’라는 세 글자와 마주할 때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무거움과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청년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뛰어난 학업 역량과 사회정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품은 우수한 인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임신·출산, 갑작스러운 질병과 사고, 돌봄의 의무와 같은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뜻을 펼치지 못하고 사회적 낙인 속에 힘겨워하는 제자들의 삶을 바라보며 교육자로서 성찰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구팀이 보여준 데이터와 심층 인터뷰 결과는 우리 법학교육이 마주한 문제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응시제한자들은 결코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할 열정과 능력을 가진 우수한 인재들입니다. 그러나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는 이들을 충분히 포용하지 못했고, 그 결과 매년 적지 않은 청년들이 장기간의 경력 단절과 경제적·신체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들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외면해 왔던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하고, 법학교육의 미래를 논의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응시제한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함께 성찰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가진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 방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어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과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홍대식 이사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축사

노혁준 원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축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 변호사시험 제도의 실행과 응시제한자의 경험을 통해 본 법학교육의 미래와 비전

존경하는 홍대식 이사장님, 윤세리 변호사님, 그리고 오늘 귀한 강연을 맡아주신 Danielle Conway 학장님과 발표자·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법조계·학계·정부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노혁준입니다.

먼저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주제로 오늘 세미나를 마련해 주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후원기관인 법무법인 율촌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문제는 단순히 시험제도 운영에 관한 기술적 쟁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학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 법조인 양성제도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국가가 전문인력 양성 과정에서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에게 법조인이 될 기회를 제공하고, 실무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지난 17 년 동안 우리 로스쿨 제도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법조인의 구성은 더욱 다양해졌고, 법학교육은 이론 중심에서 실무와 문제해결 중심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과제들도 드러났습니다. 그중에서도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제도는 가장 첨예한 논의 대상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응시기회를 모두 사용한 분들의 경험은 단순한 개인의 실패담이 아니라, 우리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체계가 어떤 부분을 성찰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회적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미나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정한 입장을 미리 정해 놓고 제도의 존폐를 논의하기보다는, 실제 경험 및 실증적 자료에 기초하여 그리고 해외사례를 참조하여 기존 제도가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간 이러한 쟁점은 실제 방치되고 있었는데, 오늘 발표와 토론이 향후 성숙된 논의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오늘의 논의가 단지 응시제한 제도에만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의 발전과 법률시장의 변화 속에서 법학교육은 더욱 큰 전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미래의 법학교육은 단순히 시험 합격자를 배출하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법률가를 길러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논의되는 다양한 문제의식 역시 결국은 그러한 미래 비전을 고민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역시 법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과 진로를 지원하며,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법조인 양성체계를 발전시키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서로 다른 경험과 의견을 경청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공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세미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혁준 원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환영사

윤세리 명예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환영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 변호사시험 제도의 실행과 응시제한자의 경험을 통해 본 법학교육의 미래와 비전

존경하는 국내외 법조계 및 법학계 귀빈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저는 법무법인 율촌의 윤세리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희 율촌 강당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을 통해서 본 법학교육의 미래와 비전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제가 여러분께 환영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님과 노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님, 그리고 멀리 미국에서 오신 Danielle M. Conway 미국로스쿨협의회 회장님과 Titichia Jackson 미국 변호사시험 및 경력개발센터장님을 비롯한 발표자 및 참석자 여러분과 특히 이렇게 훌륭한 국제심포지엄을 잘 준비해 주신 이재협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환영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빌어 감히 두 가지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이 2009년에 설립되어 첫 졸업생들의 제1회 변호사시험이 시행된 것은 2012년이니까 지금부터 약 15년 전의 일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신림동 고시학원의 법학교육 대체와 수많은 고시낭인(考試浪人)의 배출이라는 사회적 폐해를 청산하고 법조교육의 정상화라는 원대한 비전을 안고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그러한 비전과는 상당히 떨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심포지엄의 주제인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으로 인한 소위 “오탈자(五脫者)” 문제입니다.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이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책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오래 전부터 공감해 왔습니다.

다른 모든 사회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해관계에 따라 그룹별로 매우 다른 원인의 인식과 해결책에 관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같은 로스쿨 학생조차도 변호사시험 합격 전후에 따라 이해관계가 뒤바뀌면서 정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에 관하여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거의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 이 자리에도 주로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대리인집단의 대표들만 있고, 이 문제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진정한 이해관계자 - 법률영어로 표현한다면 “real party in interest” -의 대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진정한 이해관계자 내지 궁극적 이해관계자는 바로 법조와 법조교육의 존재목적인 법률 소비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심포지엄의 개최를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심정으로 환영하면서도 앞으로 이 논의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진정한 이해관계자 내지 궁극적 이해관계자인 법률

소비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이 문제도 이론적 논쟁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 대안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심포지엄은 목차와 발표자들의 지역별 분포만 보더라도 상당히 전향적이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법률소비자 다음으로 이해관계가 크다고 할 수 있는 응시제한자가 토론자로 참석한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지역 간의 이론적 논쟁은 사실 대리인 간의 논쟁에 그쳐 이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응시제한자들과 법률소비자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이 두 그룹의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종합하여 응시제한자들을 위한 실행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보다 훨씬 더 생산적 과정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이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좋은 출발점이라고 믿으며 이런 노력을 통하여 우리 법조가 법조교육과 법률서비스라는 양 날개로 무궁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여러분의 진지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윤세리 명예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기조강연

Legal Education: An Essential Rule of Law Pillar in Times of Peace, Progress, or Precarity

Danielle M. Conway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로스쿨 학장, 미국로스쿨협의회 회장)



소 개

■ 기본 사항

성명	대니엘 M. 콘웨이(Danielle M. Conway)	
소속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디킨슨 로스쿨	
전공 및 연구분야	정부조달법, 지식재산법	

■ 학력

학력	○ LL.M. 조지워싱턴대 로스쿨 - 환경법·정부조달법 복수 석사(1996) ○ J.D. 하워드대 로스쿨 - Cum laude, Howard Law Journal(1992) ○ B.S. 뉴욕대 스톤경영대 - 재무·국제경영 복수전공(1989)
----	--

■ 주요 경력

현직	○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디킨슨 로스쿨 학장 ○ Donalds J. Farage 법학 석좌교수 ○ 미국 로스쿨협회(AALS) 회장(2026), 집행위원(2025~2028) ○ 미국변호사협회 법학교육·변호사자격 심사위원회 평가단 의장(2023, 2026)
주요 경력	○ 주대법원장협의회(CCJ)·주법원행정관협의회(COSCA) 법조자격 워킹그룹 위원(2024) ○ AccessLex Institute 이사(2021), 반인종주의개발연구소(ADI) 설립·운영 ○ 메인대 로스쿨 학장(2015~2019) ○ 하와이대 마노아 로스쿨 교수 겸 조달연구소장(2000~2015), 비즈니스법 석좌교수 ○ 미 육군 법무관 중령 - 계약·재정법 담당, 태평양사령부 부법무참모 등(2002~2016, 전역)

Legal Education: An Essential Rule of Law Pillar in Times of Peace, Progress, or Precarity

Danielle M. Conway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로스쿨 학장, 미국로스쿨협회 회장

1. Introduction: Shared Responsibility for the Future of Legal Education (2.5 minutes)

Good morning/afternoon colleagues,

I am deeply honored to be invited to speak to such an august group of legal education stakeholders here in Seoul.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our esteemed hosts—the Association of Korean Law Schools, The Yulchon Law Firm, and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for curating this timely and critical Conference, dedicated to **“The Future and Vision of Legal Education: A Perspective Based on Implementation of the Bar Exam System and the Experiences of Candidates Subject to Restrictions.”**

As this year’s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Law Schools (AALS), representing over 200 member law schools, and as the Dean of Penn State Dickinson Law, I stand before you not to lecture on a perfected American system, but to engage in a shared, honest, and rigorous reflection.

The framing of today’s discussion heartens me. You have chosen to address significant, painful, and often invisible issues relating to access to justice, representation, and fairness. You are doing this by looking inward at the structure of the Republic of Korea’s bar examination system, and its profound impact on candidates who face critical restrictions. This kind of institutional introspection is rare, difficult, and absolutely essential for the survival and expansion of the rule of law.

2. Rethinking the Rule of Law: Who is It Truly For? (4 minutes)

In my research, writing, and structural implementation of legal education, I have thought deeply about what a “strong rule of law” actually means. Too often, we treat the rule of law as an abstract, untouchable concept—a mere slogan that “no one is above the law.” But

abstract concepts have currency only when real-world institutions and real-world people can rely on them.

Normatively, the foundation for the rule of law should not shift and change to suit the whims of those in power, nor should it serve as an ideological shield for exclusionary institutional habits. A nation's rule of law must be measured by how it treats human beings under its jurisdiction.

When we look at the rule of law through the lens of legal education, we must realize that our work is never finished. Within the legal profession, we constantly witness the tension between justice and injustice, fairness and unfairness, inclusion and exclusion.

I argue today that a strong rule of law only has genuine meaning when those who are most vulnerable in society can see themselves within that rule of law. They must have access to justice, and they must be active participants in the exercise of governance. If our legal education systems and our licensing mechanisms do not reflect this ethos of inclusion, then we are not building a rule of law; we are simply managing a rigid "system of laws" that protects the status quo.

3. The Danger of Extreme Gatekeeping and Selective Stratification (4 minutes)

This brings us directly to the core dilemma of today's symposium: the bar exam and the institutional restrictions imposed on its candidates.

Let me be perfectly clear and offer a cautionary perspective from the American context. Historically, legal education and the legal profession in the United States were intentionally exclusive and selective. This narrow, elitist lens was built by design. It embedded and institutionalized hierarchies based on race, class, gender, and socio-economic privilege. For generations, U.S. legal pedagogy, curriculum, and the bar examination functioned as aggressive tools of gatekeeping, ensuring that only those who could afford the high cost of entry could access the profession.

What happens when a society enforces professional competencies that are higher, more rigid, or more punitive than necessary for fundamental, high-quality legal work?

The result is immediate and damaging: it creates a severe stratification of access to justice. It fosters elitism and classism. It drastically reduces diverse representation. And most tragically, it promotes extreme gatekeeping at the very beginning of a candidate's journey in the legal profession. It completely fails to acknowledge that our profession is fundamentally

one of lifelong learning by practice, not of rote memorization under artificial, high-stakes terror.

When candidates face systemic restrictions or absolute limits on their ability to prove their competency, we must look closely at the human cost—the "deferred lives" and the structural exclusion that result from a closed, punitive system.

4. Human-Centered Systems Design and the 'NextGen' Alternative (4 minutes)

How do we break away from this legacy of exclusion? In my work, I have found incredible power in engaging **Systems Design and Design Thinking** to ideate innovations in legal education.

For lawyers and legal educators, Systems Design is defined as a hands-on, user-focused way to relentlessly innovate, empathize, and humanize with others to solve complex problems. It is fundamentally user-centered, experimental, responsive, intentional, and tolerant of failure.

To apply design thinking to the bar exam crisis means we must first engage in empathy. We must learn about the audience for whom the system is meant—our law students and the candidates who are suffering under its current weight. We must define the challenge based on user needs, brainstorm creative solutions, and test prototypes of reform.

The question should never be whether we hold on to traditions just because they are traditions. Rather, the question must be: What does a commitment to a strong rule of law require us to do at each stage of a lawyer's progression?

In the United States, this urgent realization has sparked a major transformation. Many U.S. law schools are moving away from the old, exclusionary pedagogy. We are developing live-client clinics, human-centered innovations, and responding to the constitutional promise of a truly inclusive, multicultural society. Most notably, we are currently transitioning to the **NextGen Bar Exam**. This comprehensive reform is designed to finally acknowledge and remediate historic inequities, focusing on balancing actual, practical competency with broad, inclusive representation.

5. Conclusion: Illuminating New Pathways Together (1.5 minutes)

Law makes distinctions all the time, and these distinctions are frequently drawn based upon power, wealth, and influence. It is the sacred duty of the rule of law to balance this influence

and to protect the demos—the people—from institutional dominance. Because legal education is so intimately intertwined with sustaining a fair and functioning democracy, the roles played by our law schools, courts, and bar examiners are absolutely fundamental.

We cannot succumb to the status quo. We cannot retreat from the active engagement required to disrupt the narrow lenses of exclusivity and selectivity that reduce the public good.

I look forward with great anticipation to today's sessions and to hearing from the esteemed Korean experts gathered here. May our dialogue today deepen our mutual understanding, build profound institutional trust, and illuminate brand-new pathways for Korea-US collaboration. Let us apply systems design and design thinking together to uphold, sustain, and humanize the rule of law.

Thank you very much.

발표 1

The Evolving Landscape of JD Careers & Academic Success

Titichia Jackson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교수, 변호사시험 및 경력개발센터장)



소 개

■ 기본 사항

성명	티티시아 M. 잭슨(Titichia Mitchell Jackson)	
소속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디킨슨 로스쿨	
전공 및 연구분야	법조윤리, 민사소송법, 계약법, 가족법, 불법행위법	

■ 학력

학력	○ J.D. 노스캐롤라이나 센트럴대 로스쿨 - Constitutional Laws & Civil Right Certificate, Magna Cum Laude(2011) ○ M.A. 페이엣빌 주립대 - 영문학 석사, Summa Cum Laude(2008) ○ B.A. 페이엣빌 주립대 - 영문학·정치학 복수전공, 수석졸업, Summa Cum Laude(2006)
----	--

■ 주요 경력

현직	○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디킨슨 로스쿨 조교수(2020~현재) ○ 학업성취·변호사시험 합격 담당 디렉터(2020~현재)
주요 경력	○ 노스캐롤라이나 센트럴대(NCCU) 로스쿨 변호사시험 준비·지원 디렉터(2016~2020) ○ BARBRI 법학교육 디렉터(2011~2015), 본인 법률사무소 변호사(2011~2020, 가사·교통 사건)

The Evolving Landscape of JD Careers & Academic Success

Titichia Jackson

Assistant Professor of Law
Director of Academic Success & Bar Passage
Penn State Dickinson Law

The Association of
Korean Law Schools

Non-Traditional Has Become Traditional

<40%

of JD graduates enter traditional practice

"Non-traditional has become the new traditional."

A paradigm shift in career pathways
beyond standard legal practice.

The majority of today's JD graduates build careers in policy, compliance, technology, business, government, advocacy, and in-house counsel roles — work that draws fully on legal training but does not resemble the law-firm associate path.

National Trend

~60% Bar Passage Required → ~60% JD Advantage

A roughly even split between the two pathways.

Reimagining Academic Success

A holistic, integrated framework built around ABA Standard 303

Holistic Framework

- 01 Beyond Bar Preparation**
Extends past doctrinal and licensure work to holistic support.
- 02 Integrative Framework**
Fostering identity, resilience, wellness, and a true sense of belonging.
- 03 Whole-Student Development**
Developing students academically, professionally, and personally.
- 04 Long-Term Sustainability**
Building durable careers, not just credentials.

Pathways to Legal Success Course

**One integrated course unifying
Academic Success + Career Services.**

Career Modules

Resumes, interviews, networking, professional narratives.

Academic Modules

Case briefing, exam prep, metacognition, and planning.

Professional Identity

Built intentionally from day one of law school.

Communicating JD Value & Building Employer Networks

Communicating Value to Employers

External Engagement

Building presence via alumni receptions, AALS, and industry events.

The Language of Law

Applied as a strategic communication tool.

High Future Potential

Guiding strategic branding and positioning for graduates.

Unified Voice

Faculty, staff, and administration fully aligned in messaging.

Employer Networks & Placement Pathways

JD Advantage Week & Inclusive OCI

Bringing non-traditional employers to campus through dedicated programming and on-campus interviews.

Pathways DC

Annual career immersion in regulatory and compliance markets.

Semester in Practice

Credit-bearing externships integrating professional experience with academic supervision.

Global Reach

The Hague (ICC), Washington DC, New York, New Jersey, and California.

Graduate Success Stories

Penn State Dickinson Law alumni placed across advocacy, public accounting, and global in-house counsel.

Advocacy & Policy

AIDS Law Project

Litigation and public-policy work protecting rights and shaping legislation at the state and federal level.

Employee Benefits

Rolka Loube

ERISA compliance — applying JD analytical training to plan design and regulatory review.

Global In-House

BDO Incorporated

In-house counsel at a global advisory firm handling cross-border governance, risk, and corporate matters.

Big Four Tax

Deloitte & PwC

Tax specialists — JD-trained analysts navigating the federal code, audit defense, and structuring.

Insurance & Risk

Aflac Bermuda

Associate counsel at the intersection of international insurance regulation and corporate practice.

05 | The Evolving Landscape of JD Careers & Academic Success

Beyond the “Failed Lawyer” Myth

JD Advantage ≠ Secondary Path

These roles are equally legitimate and highly impactful forms of legal leadership.

Same Core Competencies

Both paths demand advanced analysis, persuasion, and complex problem-solving.

Coexisting Cultures

A strong bar-success culture thrives seamlessly alongside expansive non-traditional pathways.

Meaningful Professional Success

Each avenue represents a vital, legitimate, and evolving form of achievement in the law.

Q & A · DISCUSSION

감사합니다 · Thank You

Professor Titichia Jackson

Penn State Dickinson Law · Association of Korean Law Schools Conference

발표 2

한국의 변호사시험제도와 응시제한제도 관련 쟁점

김우석 변호사
(신세계푸드)



소 개

■ 기본 사항

성명	김우석 변호사	
전공 및 연구분야	법인류학	

■ 학력

학력	○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법인류학 전공) 박사과정 수료 (2024.06.)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2019.02.)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국제학 학사 (2015.02.)
----	---

■ 주요 경력

현직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법무파트 변호사(2021~현재)
주요 경력	○ 제3회 울촌·온울 기초법학 논문상 장려상(2024) ○ 법무법인 청해 소속변호사(2019~2020) ○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2019)

한국의 변호사시험제도와 응시제한제도 관련 쟁점

변호사 김우석

신세계푸드

*본 발표내용은 소속기관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1. 개관

-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기회에 대하여 일정 정도의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변호사시험 도입 논의의 초입 단계에서부터 존재
- 2003년 10월 대법원 산하 자문기구로 출범한 ‘사법개혁위원회’는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전문적 법률지식, 국제적 경쟁력 및 직업윤리를 갖춘 우수한 법조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사법제도의 도입”)을 사법제도 개혁의 기본요건 중 하나로 제시

[2005년 발간 ‘사법개혁위원회 백서’의 제4장 ‘사법개혁위원회 건의문’ 중]

1. 현행 사법시험을 자격시험인 변호사시험으로 전환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응시횟수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변호사시험은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현행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시행된 때로부터 약 5년까지 현행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및 적절한 법조인 수의 유지를 위하여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점차 줄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1. 개관

- 이처럼 변호사시험 제도는 그 도입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부터 이른바 “고시낭인” 양산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응시자격 및 응시횟수에 대하여 일정 정도의 제한이 가해질 것을 예정하고 있었으며, 로스쿨 도입과 연계하여 그 교육과정을 충실히 마친 경우 비교적 합격이 어렵지 않은 시험이 될 것을 예정하고 있었음
- 법무부는 2008. 6. 10. 「변호사시험법 제정법률(안)」을 공고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 3회 이내’에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기회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제시

[법무부 공고문 중]

“... 무제한 응시로 발생하는 국가인력의 낭비, 응시인원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의 저하등을 방지하고, 자격취득시험으로서의 충실한 검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 ...”

1. 개관

- 이와 같은 법무부안에 대해서는 사회 각계 각층에서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
 -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수정 촉구 (2008. 11. 3.)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들이 지나치게 장기간 시험에 매달리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응시횟수까지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기회를 제약하는 것”
-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 3회 응시가능” 내용이 유지된 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 2009. 2. 12. 국회 본 회의에서 부결
- 응시기한은 그대로 유지한채 응시횟수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 5회 응시가능”으로 수정 -> 2009. 5. 28. 「변호사시험법」 제정

변호사시험 '5년내 3번 제한' 파장

입력 2008.03.12. 오후 8:41 · 수정 2008.03.12. 오후 8:41 · 기사원문

공감 댓글

변호사시험 3회로 제한 “직업선택 자유 침해... 위헌논란 일 듯”

입력 2008.05.08. 오후 2:30 · 수정 2008.05.08. 오후 2:30 · 기사원문

로스쿨協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없애야"

입력 2008.11.03. 오전 11:57 · 수정 2008.11.03. 오전 11:58

1 댓글

1. 개관

- 한편, 법무부 제정안부터 현행법률에 이르기까지 변호사시험법은 **병역의무 이행에 소요된 기간을 응시제한 기한산입의 유일한 예외사유로** 인정하고 있음
- 다만, 최초로 시행된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예정자의 신분에서 변호사시험 응시가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석사학위취득 예정자’ 신분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를 응시제한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할 근거를** 결하고 있었는데, 2018. 12. 28. 관련 부분이 개정되어 현행법률까지 그 내용이 유지되고 있음

「변호사시험법」

(법률 제15975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쟁점

(1) 응시제한 제도의 정당성 논쟁 일반

찬성론

- 변호사시험의 정책적 기능을 강조 (법조인 양성 및 수급조절 기능수행 등)
- 무제한 응시 허용 시 이른 바 “고시낭인” 즉, 장기 수험생 문제가 반복되고 국가 인력 운용의 비효율 발생

반대론

- 응시자의 권리 침해 국면을 강조 (직업선택의 자유의 과도한 제한, 평등권 침해 등)
- 국가 인력 낭비 방지는 변호사 자격 검증과 연관이 없는 상이한 정책목표에 불과
- 응시제한자들이 겪는 사회적 낙인과 직업선택의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면 응시제한제도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어내어 비가시화할 뿐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

2. 쟁점

(1) 응시제한 제도의 정당성 논쟁 일반

찬성론

- 일정한 기간 내 교육성과를 평가함으로써 로스쿨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교육목적 달성을 도모
- 응시기회 영구박탈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정된 결과

반대론

- 합격률을 통제하면서 재응시를 제한하는 구조는 오히려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강화
- 로스쿨 수료자에 대한 인력활용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응시기회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은 제도설계의 한계 및 결함을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

2. 쟁점

(2) 내용 및 방식의 적절성 문제

- 응시기회 제한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견지에서도 그 내용 및 방식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다양한 층위의 의견 존재

응시횟수제한의 완화	응시기한제한의 유지
최초 법무부안의 <u>3회</u> → 본 회의 부결 및 국회 추가 논의 후 <u>5회</u> 로 완화	최초 법무부 제시안부터 현행 법률에 이르기까지 <u>5년</u> 이라는 기한이 동일하게 유지

- 응시기한제한의 경우 그 내용이 법무부안에서부터 현행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5년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이를 충분한 사회적 숙의의 결과물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임
- 변호사시험법의 제정 당시 국회 내부에서는 5년이라는 응시기한 설정의 적절성에 대한 강력한 이의제기가 있었음
 ✓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횟수제한은 유지하되, 기한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함

[제282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中]

(일시: 2009년 4월 22일,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박영선 국회의원

... 집안 형편이 매우 어려운 사람이 로스쿨을 아주 어렵게 졸업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 떨어져 가지고 자기가 어디 회사에 취직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경우에 5년이라는 거는 굉장히 짧은 세월 ... 로스쿨 졸업하고 나서 몸이 아파서 장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경우라든지 ... 이것이 내 적성에 맞지 않는가보다 해서 포기하고 다른 직업을 선택했다가 ... 변호사시험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를 감안한다면 5년은 너무 짧은 것이 아닌가 ...

○ 김경한 법무부장관

... 여러 가지 경우를 다 예상해 가지고 법을 만든다는 것이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고, 또 로스쿨을 졸업하고 5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 너무 오랫동안 고시낭인이, 변호사시험 낭인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이니만큼 다소 개인적인 사정까지 전부 고려해서 입법하기는 좀...

○ 박영선 국회의원

“저는 이 5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기록에 남겨놓겠는데요, 이 부분은 저는 반대합니다.”

2. 쟁점

(3) 예외사유 인정규정의 적절성 문제

- 변호사시험법이 응시기한 제한의 유일한 예외사유로서 ‘병역의무의 이행’만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조계 내부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수차례 제기되어 왔고, 국가기관에서도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한국여성변호사회:** 2018. 7. 12. 및 2023. 8.29. 두 차례에 걸쳐 응시기한제한의 예외사유에 임신·출산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성명
 -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 2023. 9. 6. 응시유예 사유에 임신·출산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
 - **여성가족부:** 2017년 실시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기반하여 응시기회 제한규정에 여성 수험생의 임신·출산 기간을 예외로 두도록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 2018년 및 2025년 두차례에 걸쳐 임신·출산 등을 예외사유로 인정하는 입법적 개선을 법무부에 권고
 - [1단계 조치사항]: 출산 시 1년의 기간을 응시기한에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할 것을 권고(조치기한: 이번 해 9월 까지)
 - [2단계 조치사항]: 유산·사산에 대한 예외인정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별도의 조치기한 없음)

3. 응시제한제도의 위헌성 판단 (응시기회 제한조항)

-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대한 5건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2016년 9월 29일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따른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최초의 결정을 선고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6헌마47 등)
- 동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응시기회제한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림
 - ✓ 다른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재취득한 경우 응시기회를 재부여하도록 하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아니한 점에 대해서도 합헌 판단
 - ✓ 병합된 사건 중에는 동법 제7조 제2항(“응시기회제한 예외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도 있었으나, 청구기한 미준수를 이유로 각하결정이 내려졌는바 위헌성에 대한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함
- 위 결정이 선고된 이후로도 여러 차례 응시기회제한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 청구가 이루어졌으나, 헌법재판소는 선례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합헌결정을 내려오고 있음

3. 응시제한제도의 위헌성 판단 (응시기회제한 예외조항)

- 응시기회제한 예외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2020. 11. 26. 에 이르러 최초로 내려짐 (2020. 11. 26. 선고 2018헌마733 전원합의체 결정)
-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응시기회제한 예외조항”)의 평등권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9조 제2항의 요청에 따른 합리적 차별이라고 보아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하였고, 응시기회 예외조항에 대한 뒤따르는 결정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려오고 있음
- 다만,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에 대하여는 재판관 일부가 계속하여 반대의견을 밝혀 왔음
 - ✓ 반대의견은 법정의견이 제시하는 ‘일률적인 입법의 곤란성’이나 ‘형평성 훼손의 우려’가 병역의무 이행으로 변호사시험을 응시하지 못하는 집단과 그 이외의 사유로 변호사시험을 응시하지 못하는 집단 사이의 차별취급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비판. 아울러, 본 사안을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 예외사유를 어떠한 방식으로 입법하고 운용할 것인지의 문제로 파악하면서, 입법자는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3. 응시제한제도의 위헌성 판단 (응시기회제한 예외조항)

- 한편, 이처럼 소수 재판관들이 계속하여 반대의견을 제기하고 있던 중 지난 5월 21일 선고된 결정에 따라 응시기회제한 예외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재판관들 간 의견의 무게추가 이동
- 지난 5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응시기회제한조항’에 대하여 재판관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으나, ‘응시기회제한 예외조항’에 대하여는 재판관 9인 중 5인이 동 조항이 임신·출산의 사유로 변호사시험에 제대로 응시하지 못한 변호사시험 준비생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개선입법이 있을 때 까지 계속적용을 명하는)헌법불합치 의견을 표명
- 이로써, 응시기회제한 예외조항의 경우 위헌결정의 정족수(6인 이상)를 충족 하지는 못하였으나, 위헌(헌법불합치)의견이 재판관의 다수의견이 된 상황

[헌법재판소 2026. 5. 21. 선고 2023헌마855 등]

- 예외조항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헌법 제36조 제2항에 의한) 국가의 모성보호의무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변호사시험 준비생이 시험을 준비하는 도중 임신 및 출산을 하는 경우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안게 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이 작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입법자는 적어도 임신 및 출산의 사유로 변호사시험에 제대로 응시하지 못한 준비생에 한해서는 응시한도의 예외를 인정하여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응시제한제도의 위헌성 판단 (응시기회제한 예외조항)

- 예외조항은 오로지 병역의무 이행자만을 응시기간의 예외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외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모두 배제하고 있다. 또한 임신 및 출산을 예외사유로 규정한다고 하여 인력의 효율적 배분이나 시험기회에 있어서의 형평성 확보라는 공익 달성이 어려워진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중대함 따라서 예외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 [헌법재판소 2026. 5. 21. 선고 2023헌마855 등]

- 이와 같은 재판관 5인의 반대의견은 변호사시험법의 입법단계에서 사회적 숙의가 부족하였음을 드러내고 입법적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헌법적 재검토의 가능성을 시사

- 한편,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즉 ‘응시기회제한조항’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려오고 있으나, 학계에서는 이와 같은 합헌결정의 정당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 ✓ 응시기한의 제한은 응시횟수의 제한을 무력화할 수 있으므로 양자를 동일한 차원에서 검토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양자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위헌성 여부를 판단한 것은 부당
- ✓ 응시횟수의 제한은 응시자들의 ‘자기운명결정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검토를 생략한 것은 판단유탈

4. 입법적 논의

- 제20대 국회에서부터 현행 제22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총 9차례에 거친 응시기회제한 조항에 대한 개정안 발의가 있었음
- 7개 의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개 의안은 국회에 계류 중

[제20대 국회]

- 2017. 11. 17.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안: 임신·출산으로 변호사시험에 미응시한 경우 1회의 추가 응시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되, 응시기한 산입 개시일로부터 6년 이내에만 응시하도록 단서를 부여하도록 규정
- 2018. 2. 19.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안: 임신·출산 시 자녀 1명당 1년의 기간을 응시기한 도과에 미산입하도록 규정
- 2019. 4. 12. 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안: 응시원서 제출 후 임신을 한 경우 1회당 1년의 응시기한을 공제하면서, 유산 및 사산한 경우도 포함되도록 규정

4. 입법적 논의

[제21대 국회]

- 2020. 12. 20. 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안: 임신한 기간 및 그 종료 후 3개월의 기한을 응시기한에 미산입하도록 규정
- 2020. 12. 20.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안: 출산 시 자녀 1명당 1년의 기간을 응시기한에 미산입하도록 규정
- 2021. 10. 7. 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안: 응시‘기한’에 대한 제한을 전면 폐지
- 2023. 8. 2. 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안: 임신·출산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병에 대하여도 응시기한 산입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규정

4. 입법적 논의

[(현행) 제22대 국회]

- 2025. 1. 20.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안: 출산 시 자녀 1명당 1년의 기간을 응시기한에 미산입하도록 규정
- 2025. 12. 24.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안: 출산 1회(다태아포함)에 대하여 1년 + 임신 중 유산·사산 및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미산입하도록 규정

[경향성 및 추이]

-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개정안에서 다루는 응시기회제한 예외사유의 포섭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있으며, 예외사유를 유형화 하는 방식도 세밀해지고 있는 추세
- 다만, 그 동안 발의된 법안들은 대체로 응시기회제한 예외사유의 확충 및 보완에 대한 논의에 집중되어 있고 응시제한제도 자체의 정당성 및 그 내용과 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입법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

5. 해외의 경우 (미국)

- 현재 미국 내 50개 주(Sates) 및 Washinton, D.C를 포함한 총56개 관할권역(jurisdiction)이 자체적으로 변호사자격을 부여 중
-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에 대한 사항은 각 관할구역의 대법원 및 변호사시험위원회에서 등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규율되고 있는데, 응시횟수에 대한 제한을 중심으로 하여 규율
- 버몬트(Vermont) 주의 경우 과거 응시횟수를 4회로 제한하면서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에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응시기한에 대하여도 제한을 두고 있었으나, 올해 1월 「버몬트주 대법원 변호사 자격인정 규칙(Rules of Admission to the Bar of the Vermont Supreme Court)」을 개정하면서 응시기한 제한규정을 삭제

→ 현재 미국에서는 응시'기한'을 제한하고 있는 관할권역은 없는 상태

- ✓ 위 버몬트 주 변호사 자격인정 규칙의 개정문에 부기된 위원회 주석(Board's Note)은 응시기한 제한규정의 삭제배경을 밝히면서 다른 관할권역에서 로스쿨 졸업 후 일정기간 내로 응시기한에 제한을 두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음을 밝히고 있음

5. 해외의 경우 (미국)

- 현재 미국 내 과반 이상의 관할구역(약 64%)에서 응시횟수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가장 큰 법률 시장인 New York과 California에서도 응시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 미국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약 137 만명) 의 4분의 1 이상이 New York(약 18만명)과 California(약 17만명) 에서 근무 중 (Source: 2025 ABA Profile of the Legal Profession)
-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관할구역 중 약 3분의 2는 추가적 응시기회를 부여
 - ① Arizona (4회), ② District of Columbia (4회), ③ Idaho (6회), ④ Iowa (2회), ⑤ Montana (3회), ⑥ Nebraska (4회), ⑦ Oklahoma (5회), ⑧ South Dakota (3회), ⑨ Texas (5회), ⑩ Utah (6회), ⑪ Vermont (4회), ⑫ Virginia (5회), ⑬ West Virginia (4회), ⑭ Wyoming (4회)
 - ✓ 위 14개 관할권역은 응시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시험위원회나 주 대법원의 재량에 따라 추가적 응시 기회 부여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이들 중 다수의 주가 추가적 응시 기회 부여에 관대한 태도
 - ✓ Iowa의 경우 2회의 응시 기회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13회 응시한 사례도 있음
- 응시횟수를 제한하면서 추가적 응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관할권역은 전체 관할권역 중 8분의 1에 불과:
 - ① Kentucky (5회), ② New Hampshire (4회), ③ North Dakota (6회), ④ Rhode Island (5회), ⑤ Mississippi (4회), ⑥ Louisiana (5회), ⑦ Puerto Rico (6회)

5. 해외의 경우 (미국)

- 한편, 직접적인 응시횟수제한 이외의 방식으로 반복적 응시의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관할권역도 존재
 - ✓ Maryland의 경우 변호사시험에 3회 이상 불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시험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추가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 South Carolina의 경우 3회 이상 불합격한 경우 다음 응시까지 1년의 휴지기를 두도록 규정

[경향성 및 추이]

- 1970년대 중반 미국 주(州)의 약 3분의 2에서 응시횟수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후 전반적으로 완화 추세
 - ✓ Tennessee 주: 과거 총 4회만 응시허용 → 추가 응시 기회 부여 → 현재는 무제한 응시 가능
 - ✓ 현재는 전체 관할권역 중 8분의 1에서만 응시횟수를 제한 (+ 이중 3분의 2는 추가적 응시기회를 부여)

[시험에 대한 인식]

- 선행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과정을 적절하게 이수하였다면 합격이 보장되는 '통과의례적 자격시험'으로 인식되고 있음
 - ✓ 한국의 변호사시험은 대체로 '이중적 선발구조'로 인식되는 점과 대비

5. 해외의 경우 (일본)

- 1999년 내각에 설치된 ‘사법제도개혁심의회’가 2년의 논의 끝에 제출한 2001년도 권고의견에 따라 일본은 점수 중심의 전통적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교육 및 과정 중심의 로스쿨(法科大學院)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
 - 2004년 4월 68개 로스쿨의 개교와 함께 신(新)사법시험이 도입되었고, 장기수험생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도입 초기에는 ‘응시자격 취득 후 5년 이내 3회’로 응시를 제한했으나 인재들의 법조계 진출 기피 우려로 2014년 횡수제한규정을 삭제하여, 현재는 ‘응시자격 취득 후 5년 이내’ 응시 가능
(→ 매년 1회 7월경 시험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5회의 횡수제한으로 기능 중)
 - 2011년 도입된 ‘사법시험 예비시험’에 합격한 경우도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부여
 - 2019년부터 「사법시험법」의 개정으로 로스쿨에 재학 중인 자 중에서, 해당 대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고 1년 이내에 해당 과정을 수료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도 응시자격을 부여
 - ◆[(신)사법시험 응시자격]: ①로스쿨 수료자, ②예비시험 합격자, ③1년 이내 로스쿨 수료예정자
- 단, 일본의 경우 5년의 응시기한이 도과한 경우에도 다른 자격요건을 재취득함으로써 다시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허용 → 한국과 같이 응시횟수나 응시기한을 도과함으로 인하여 변호사시험의 응시기회를 영구적으로 박탈당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6. 정리 및 제언

- 응시제한제도는 그 정당성, 제한의 내용과 방식 및 예외사유의 범위 등 여러 층위에서 논란을 수반함에도 불구하고 입법 당시 이와 같은 쟁점들을 정리하기 위한 충분한 사회적 숙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움
 - ✓응시횟수와 기한을 함께 제한하는 방식의 타당성, 5회·5년이라는 수치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도 여러 의견이 존재할 수 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함
 - ✓임신·출산, 질병, 사고 등 병역의무 이행 외의 사유를 응시기간 산입의 예외사유로 인정할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는 점은 입법 당시의 논의가 응시제한제도의 현실적 효과와 한계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였음을 시사
 - ✓입법 과정에서 개별 응시자의 생애경로에 따라 발생 가능한 다양한 사정을 유형화하거나 예외사유로 반영하는 등의 심층적 논의가 충분히 전개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음

6. 정리 및 제언

● 정책목표의 편중적 우선화 + 사회적 숙의의 부족

한국의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제도는 장기수험생 문제의 방지, 법조인 수급관리와 같은 정책목표가 우선 순위로 고려되는 과정에서, 응시자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불가역적인 불이익과 생애경로에서 발생가능한 다양한 사회적 사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 및 사회적 숙의가 미흡한 상태로 제도화된 채 유지되어 오고 있다고 평가 가능

● 경험적 연구의 필요성

응시제한제도 자체의 정당성 및 적법성 등에 대한 연구는 여러 차례 이루어진 적 있으나, 응시제한자를 대상으로한 경험적 연구는 아직까지 부재함. 입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던 응시제한제도의 현실적 효과를 개별 응시제한자들의 경험을 통해 재구성하고 응시기회 제한제도가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 진다면, 입법 당시의 숙의부족을 사후적으로 보완하고 향후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경험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감사합니다.

발표 3

응시제한자, 그들은 누구인가?: 변호사시험 5회 탈락자와 합격자에 대한 다차원적 실증분석

우지숙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소 개

■ 기본 사항

성명	우지숙 교수	
소속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전공 및 연구분야	행정과 커뮤니케이션, 정책 홍보, 조직 커뮤니케이션, 인터넷 정책, 저작권법,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 인공지능정책, 정부-언론 관계	

■ 학력

학력	○ 뉴욕대학교(NYU) 로스쿨 J.D.(1994.09.~1997.05.) ○ 펜실베이니아 대학교(U. of Penn.) 언론학 석사/박사(1989.09.~1996.05.) Doctor of Philosophy in Communication, Annenberg Schhol for Communic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 학사(1985.03.~1989.02.)
----	---

■ 주요 경력

현직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2003.02.~현재)
주요 경력	○ 검찰 정보화 발전 자문위원회 위원(2026.01.~현재) ○ 한국정보통신법학회 부회장(2025.07.~현재)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2023.01.~2025.12) ○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도메인 분쟁 패널리스트(2001.02.~현재) ○ 미국 뉴욕주 변호사 협회 회원(1998.11.~현재)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1997.09.~2000.01.)



응시제한자, 그들은 누구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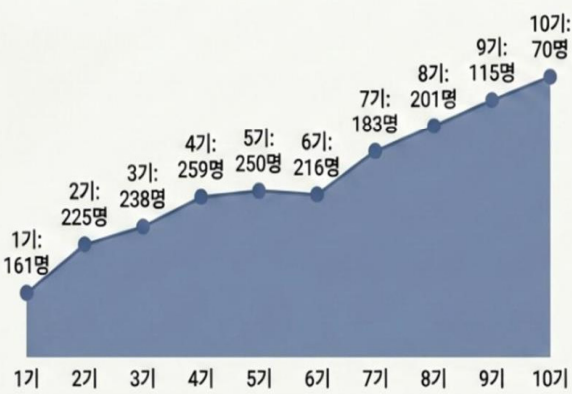
변호사시험 5회 탈락자에 대한 다차원적 실증 분석

2026. 6. 9.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우지숙 교수

NotebookLM

응시 제한 대상자 합계 (1~10기): 총 1,918명



구분	응답 빈도 (비율)
5회 응시	950(49.5)
4회 응시	318(16.6)
3회 응시	226(11.8)
2회 응시	222(11.6)
1회 응시	167(8.7)
응시한 적 없음	35(1.8)
합계	1,918(100)

[표] 응시제한자들의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

구분	응답 빈도 (비율)
5회 응시	950(49.5)
4회 응시	318(16.6)
3회 응시	226(11.8)
2회 응시	222(11.6)
1회 응시	167(8.7)
응시한 적 없음	35(1.8)
합계	1,918(100)

NotebookL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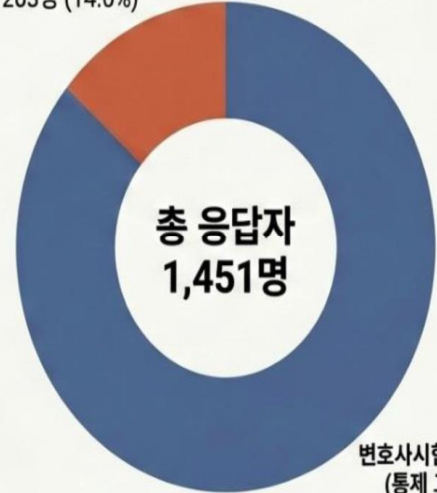
연구 개요 및 대상자 현황: 설문 표본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1~14기 졸업생 1,451명 대상
설문 조사 결과 (응시제한자 203명 vs 통제그룹 1,248명)

분석의 목적

단순한 시험 실패가 아닌,
인구통계, 경제적 격차, 학업 환경,
로스쿨 내 상호작용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한 데이터 기반
심층 진단

응시제한자:
203명 (14.0%)



변호사시험 합격자
(통제 그룹):
1,248명 (86.0%)

NotebookLM

인구통계학적 특성

응시제한자들은 합격자 집단에 비해 연령대가 뚜렷하게 높으며, 현재 경제적 기반에서 심각한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표] 주요 인구사회학적 분포 및 소득 비교

구분	응시제한자 (n=203)	통제그룹 (n=1,248)
연령 분포 (30대/40대/50대 이상)	44.3% / 47.3% / 8.4%	58.5% / 29.7% / 3.1%
현재 혼인 상태 (기혼)	38.9%	55.5%
현재 월 평균 가구 소득 (세전)	약 706만 원	약 1,180만 원
소득 600만 원 이하 비율	53.2%	13.0%

소득 양극화: 가구 소득이 통제그룹 대비 약 60% 수준에 불과하며, 월 474만 원의 유의미한 격차($p < .001$)를 보입니다.

결혼 지연 현상: 시험 준비 당시에는 제한자의 기혼 비율이 더 높았으나(18.3% vs 10.7%), 현재는 역전되어 시험 탈락이 생애 주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시사합니다.

NotebookLM

졸업 후 직업 및 고용 현황: 지연된 출발과 구조적 장벽

법전문 졸업이라는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비상근직에 머물거나 법학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첫 취업 소요 기간



[표] 현재 고용 상황

	응시제한자 (n=203)	통제그룹 (n=1,248)
상근직 / 정규직	50.2%	77.2%
비상근직 / 아르바이트	9.9%	0.9%
직업 없음 / 구직 중	24.1%	2.4%

[차트] 구직 과정의 주요 장벽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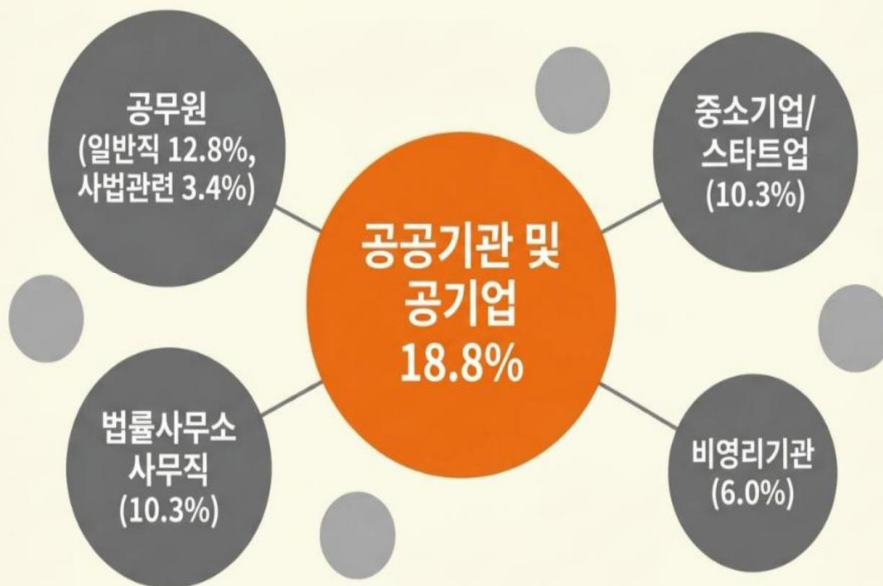
전공-직무 불일치: 취업자의 34.2%가 '법학과 관련 없는 직무' 수행 (일치도: 2.85 vs 3.82).

취업 지연: 합격자의 94.2%가 3개월 내 취업하나, 제한자의 23.1%는 첫 취업에 1년 이상 소요됩니다.

비상근직 근로 사유: 비상근직 근로의 54.2%가 '상근직 취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NotebookLM

응답자 현재 직장 분포 (상근직의 경우)



NotebookLM

직업 현황: 소득과 직무 만족도의 격차

취업에 성공한 응시제한자조차도 합격자 대비 절반 수준의 연소득을 보이며,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에서 큰 결핍을 느낍니다.

[차트] 연소득 비교 (2025년 기준, 세전)



직무 만족도 Chart



[표] 세부 직무 만족도 주요 격차 (5점 척도)

개인의 발전 가능성	제한자 3.02 (최대 격차) vs 합격자 3.65
인사체계 (승진제도)	제한자 2.85 (최하점) vs 합격자 3.23
임금 또는 급여	제한자 2.97 vs 합격자 3.28
직무 내용	제한자 3.56 vs 합격자 3.92
공공 봉사 및 공익 기여의 기회	제한자 3.36 vs 합격자 3.50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대부분의 항목에서 응시제한자의 만족도가 더 낮았고, 특히 '개인의 발전 가능성'에서 가장 큰 박탈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 봉사 및 공익 기여의 기회 항목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NotebookLM

출발선의 미세한 차이: 개인 역량 vs 경제적 기반

입학 당시 학업 역량의 편차는 크지 않은 반면, 시작점에서의 경제적 자본 격차와 부채의 무게는 확연했습니다.

[표] 학업 역량 비교

1	학부 평균 학점 (4.5만점)	제한자 3.80 vs 합격자 3.89 (편차 작음)
2	LEET 표준점수	제한자 114.84 vs 합격자 119.98 (약 5점 격차)



[표] 로스쿨 재학 중 가구 소득 및 부채

1	재학 중 월 평균 가구 소득 (월 100만 원 이상 격차)	638만 원 vs 743만 원
2	학비 대출 경험 비율	61.6% vs 42.4%
3	졸업 시점 평균 교육 대출 잔액	3,852만 원 vs 2,976만 원

응시제한자 집단은 로스쿨 진학 시 평균 한 학기 이상 늦게 입학하며(3.7년 vs 2.7년), 출발선에서 자본 격차와 누적되는 부채 부담을 안고 시작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NotebookLM

재정 조달의 역설: 비껴간 장학금과 생계형 노동

경제적 어려움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안전망은 성적에 연동되어 합격자에게 향했습니다.

[표] 장학금 및 조달 경로 차이

1	장학금 수령 경험(전체)	제한자 58.6% vs 합격자 73.0%
2	↳ 성적우수 장학금 수령	18.7% vs 43.7% (격차 심화 원인)
3	↳ 경제적 형편 장학금 수령	33.5% vs 34.6% (차이 없음)



[차트] 시험 직전 근로율

변호사시험 직전 6개월 경제적 사유로 근로한 비율

응시제한자 29.1% 통제그룹 5.1%

생계형 근로의 치명적 여파: 시험 직전 근로를 경험한 응시제한자의 91.6%가 '근로 활동으로 인해 학업 및 번시 준비에 지장을 받았다'고 응답했습니다.

NotebookLM

숨겨진 장벽: 불평등한 시간의 분배와 삶의 무게

순수 학습에 투자하는 시간은 동일했으나, 응시제한자는 삶을 유지하기 위한 '비학업적 의무 시간'에 압도당했습니다.

재학중 주당 생활 시간 할애 (주요 격차 항목)

응시제한자	학습	돌봄/ 통학/ 유급 근로
합격자	학습	돌봄/ 통학/ 유급 근로

[표] 주간 평균 생활 시간 할애 비교

하루 평균 학습 시간 (3학년)	7시간 22분 vs 7시간 39분 (차이 없음)
자발적 법학 공부 (주간)	25시간 1분 vs 24시간 11분 (차이 없음)
동거 부양가족 돌봄 (주간)	5시간 51분 vs 1시간 59분 (유의미한 차이)
등하교(통학) 시간 (주간)	5시간 44분 vs 4시간 16분 (유의미한 차이)
유급 근로 시간 (주간)	4시간 28분 vs 1시간 42분 (유의미한 차이)

[표] 수험 기간 중 생애 사건의 압박

변호사시험 당시 기혼 상태	18.3% vs 10.7%
변호사시험 당시 자녀 있음	14.8% vs 6.0% (유자녀 제한자의 86.7%가 수험에 부정적 영향 호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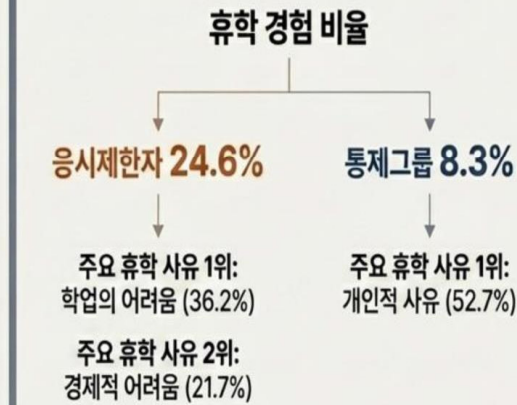
합격자와 동등한 시간을 책상 앞에서 보냈지만, 부양가족 돌봄, 생계형 근로, 장거리 통학이라는 보이지 않는 **구조적 과부하(Structural Overload)**가 이들의 학업 몰입을 방해했습니다.

NotebookLM

학업적 고립: 저조한 성취와 잦은 학업 중단

누적된 경제적, 시간적 압박은 결국 로스쿨 내 학업 성취도 저하와 휴학이라는 학업 단절로 직결되었습니다.

[차트] 재학 중 휴학 경험 및 사유



시간 빈곤이 누적된 학업적 결과



로스쿨 수학 기간:
평균 3.7년 vs 3.1년
(입학 후 지연 현상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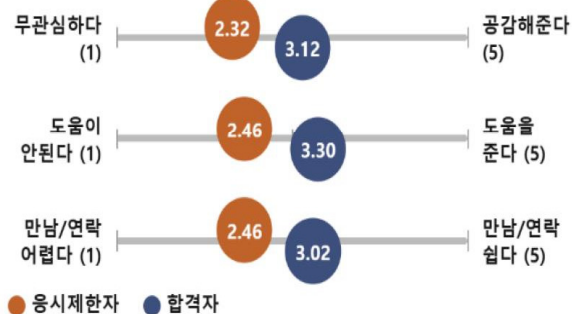
로스쿨 졸업 학점 (4.3 만점):
평균 3.05 vs 3.55

NotebookL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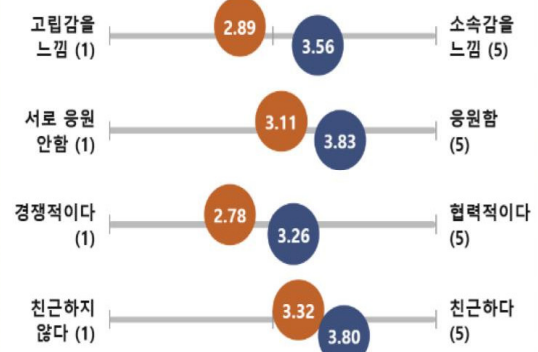
소외와 상호작용의 단절

응시제한자들은 로스쿨 재학 기간 중 학우 및 교수로부터 정서적 지지와 소속감을 얻지 못하고 고립되었습니다.

[표] 교수와의 관계 인식 (5점 척도)



[표] 학우와의 친밀도 및 관계성 (5점 척도)



* 시험 준비를 위한 학우 협력 활동: 1.89 (자주 안함) vs 2.20

제한자들이 교수와 면담하거나 피드백을 받는 빈도는 오히려 높았으나(성적 부진/위기 상황에 따른 의무적 접촉), 실질적 도움이나 질적인 정서적 유대는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NotebookLM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한 사교육 의존 심화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해가 갈수록 변호사시험을 위한 사교육 의존 경향은 응시제한자 뿐 아니라 모든 수험생들 사이에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표] 교육/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5점 척도)

	응시제한자	통제 그룹
교육과정(커리큘럼) 및 내용	2.35	3.23
변호사시험 준비 지원 프로그램	2.22	3.21
선후배 멘토링	2.37	3.07
장학금 제도	2.94	3.35
개인 상담 (학업/심리)	2.22 / 2.19	2.86 / 2.72

변호사시험 준비 사설 강의 수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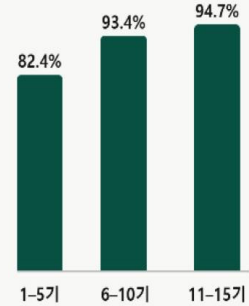
응시제한자 **97.0%** 통제 그룹 **89.8%**

학원 현장 강의 수강 비율

35.7% 17.6%

→ 응시제한자는 학원 현장강의 비중이 2배 높아 추가 교육비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입학기수별 사설 강의 수강 비율



→ 최근 입학생일수록 사교육 경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

응시제한자들은 대체로 로스쿨 교육 전반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편이었습니다. 또한 변호사 시험을 위한 사설 강의 수강 비율도 더 높아, 추가 사교육비 지출 등 경제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NotebookLM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가 가른 두 개의 삶

시험 응시 자격 영구 박탈이 초래한 삶의 격차

측정 지표	응시제한자	변호사시험 합격자
본인 평균 연소득	5,975만 원	1억 1,504만 원
졸업 시점 평균 대출금	3,852만 원	2,976만 원
취업 소요기간 (1년 이상)	23.1%	0.7%
현재 기혼 비율	38.9%	55.5%
전공-직무 일치도 (5점)	2.85	3.82
개인의 발전 가능성 만족도	3.02	3.65

NotebookLM

제도를 향한 목소리: 응시제한제도 폐지의 요구

5년/5회 규정 폐지 여부



개선 방안

- 응시 횟수 제한 폐지 (**38.0%**)
- 응시 기간 제한 폐지 (**37.6%**)
- 예외 사유(출산/질병 등) 추가 (**21.3%**)

향후 응시 의향 (The Unbroken Wi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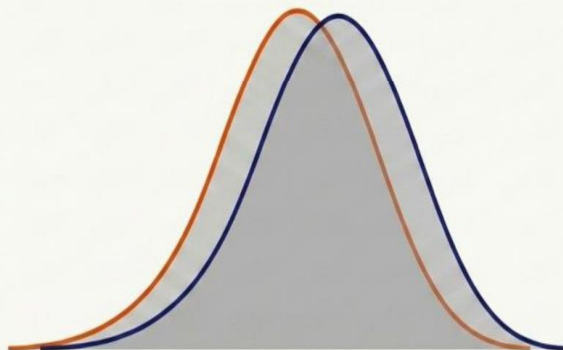
**제한이 풀린다면
71.9%가 재응시 희망**

(이 중 '2회 더 응시하겠다'는 현실적인 응답이 38.9%로 최다)
실패의 누적 속에서도 법조인을 향한 열망은 꺾이지 않음

NotebookLM

응시제한자, 그들은 누구인가

양 집단 모두 최상위권 학업 역량



학부 평균 학점 (GPA, 4.5 기준)

응시제한자: **3.80**

합격자: **3.89**

LEET 표준점수 평균

응시제한자: **114.84**

합격자: **119.98**

응시제한자의 77.9%가 GPA 3.5 이상,
79.8%가 LEET 100~130점 구간에 분포.
국내 인문사회계 최상위 수준으로 모두
치열한 경쟁을 뚫은 우수한 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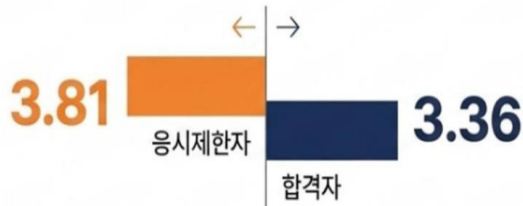
NotebookLM

진학 동기의 통계적 차이: 공익적·학문적 열망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 없음

(직업적 명예/ 높은 연봉/ 취업 전망/ 부모님 등 주변의 권유/ 법학 적성/ 공부에 대한 자신감 등 세속적·개인적 동기)

사회정의 실현에 관심이 있어서 ($p < .001$)



법학에 학문적 흥미가 있어서 ($p < .05$)



이들은 역량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공익적·학문적 동기가
다른 학우들보다 더 강했던 ‘다른 종류의 인재’였습니다.

NotebookLM

그러나 로스쿨의 교육은 이러한 ‘다름’을 포용하지 못한 듯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학습 중점 방향 평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수업 과정에서 교수님들이 다음의 활동들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5점 척도로 질문)



커리큘럼은 암기와 분석에 강하게 편중되어 있으며, 사회구성원의 관점과
공동체적 가치를 다루는 ‘공감’ 영역의 강조도는 가장 낮게 나타남

NotebookLM



교육 경험의 주관적 성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경험이 다음 각 분야에 대한 본인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5점 척도로 질문)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

폭넓은 법학 지식 습득: **2.64**

직업 및 업무 관련 지식과 기술 습득: **2.51**

인적 네트워크 형성: **2.34**

법률 연구(legal research) 역량: **2.32**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

다른 출신 배경(지역, 소득 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해: **2.08**

지역사회 복지 및 공익에 대한 기여: **1.95**

타인과 소통하는 능력: **1.92**

타인과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능력: **1.86**

높은 학문적·공익적 동기를 갖고 입학했으나, 교육 과정을 통해 이를 바탕으로 한
내적 성장(공동체 이해, 소통, 협력) 및 다양한 진로와 역할의 발견으로 이어지지 못함

결론: 잃어버린 인재, 그리고 다원화된 법조인 양성이라는 교육의 목표

1 매몰비용과 사회적 낭비의 중단

우수한 학업 역량을 증명하며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3년 간의 법학 교육을 마친 졸업생들이 평균 3,800만원의 부채를 안고 절반 수준의 소득을 올리며 전공과 무관한 직무로 밀려나는 현 상황은 국가적 인적 자원의 심각한 낭비입니다.

2 법학 교육의 목표 재점검 필요

법학 교육의 본질을 변호사 시험 대비 및 변호사 양성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목표와 배경을 가진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의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NotebookLM

감사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연구 설문조사팀

우지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김지희 (서울대학교 학부대학 전공상담교수)

김수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수료)

NotebookLM

발표 4

변호사시험의 폐쇄적 구조와 유예된 삶의 문제

공두현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 개

■ 기본 사항

성명	공두현 교수	
소속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공 및 연구분야	법철학	

■ 학력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박사(2024.02.) ○ 서울대학교 법학석사(2013.02.) ○ 서울대학교 법학사(2005.02.)
----	---

■ 주요 경력

현직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2024.02.~현재)
주요 경력	○ Visiting Scholar, Cambridge Forum for Legal and Political Philosophy(2023.01.~2023.07.)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2020.03.~2024.02.) ○ 인천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판사(2011.02.~2020.02.) ○ 사법연수원 제40기 수료(2009.03.~2011.02.)

변호사시험의 폐쇄적 구조와 유예된 삶의 문제

2026. 6. 9.(화)

공 두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응시제한자 30명 참여 인터뷰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분들

30명

응시제한자 참여
남성 19명 · 여성 11명

1~9기

법학전문대학원 기수
연령 33세~69세

60~120분

심층 인터뷰
각각 진행

직장인 20명 · 무직 6명 · 프리랜서 2명 · 개인사업 2명

인터뷰에서 다루어진 내용

-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 학교 생활 - 변호사시험 - 응시제한 - 구직 과정 - 이후 생활
- 비변호사 법학전문석사의 사회적 경험
- 설문조사 결과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생생한 목소리 기록
- 오늘은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제도에 초점

법학전문대학원 진학과 응시제한 제도

진학 당시 응시제한 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

- 초기 기수에서는 응시제한자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합격자 수가 어떻게 결정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응시제한자가 실제로 어느 정도 발생할지 예상할 수 없었다는 응답이 상당수 있었음
- 이후 기수에서도 응시제한 제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자신의 경우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응답

“3기로 입학했으니까 1기 첫 번째 입학생이 변호사 시험 합격률 나오기 전에 입학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솔직히 제도가 좀 이런 식으로 돌아갈 줄은 몰랐어요.”

“입학할 때 알고는 있었는데 근데 솔직한 마음으로는 제도가 이렇게 변형이 돼서 저희한테 적용될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자격시험이다’라고 하고 입학했는데 갑자기 이제 상대평가가 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서의 경험

학업 경쟁에서의 심리적 위축

- 많은 응답자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업 성적과 변호사시험 준비 부담으로 심리적 위축을 경험했다.

그럼에도 로스쿨 재학 시절은 '기쁨'이자 '희망'

- 그럼에도 상당수의 응답자들은 로스쿨 시절을 긍정적으로 회상했다.
- 법학을 배우고 리걸클리닉·공익활동 수업을 통해 원하는 법조인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답변한다.
- 법학 관련 전문성을 키운 시기, 법률가가 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던 시기로 기억한다.

“그냥 되게 힘들긴 했는데요.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스트레스도 좀 사실 많이 받았는데 근데 그래도 그 희망이 있어서 좀 행복하게 다녔던 것 같아요.”

“솔직히 법학이란 과목은 되게 좋아했어요. 친구들한테도 말을 했을 때 항상 이게 시험만 없으면 참 좋은 과목일 것 같다... 학문 자체는 참 재미있고 좋은 학문이다. 이렇게 평소 때 친구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변호사시험이라는 블랙홀

구조적으로 매년 200여명의 응시제한자가 발생하는 상황

-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학생들은 매우 좁은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
- 물론 입학 당시의 기대와 달리 법학에 적성이 맞지 않는 경우, 또는 현재의 변호사시험이 요구하는 방대한 암기와 집중적인 답안작성 능력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존재
- 그러나 모든 졸업생들이 성실하게 공부하여 절대적 수준이 향상된다고 하더라도 매년 200여명의 응시제한자가 반드시 발생하는 상황

변호사시험의 강한 영향

- 교육과정에 대한 영향: 더욱 더 변호사시험에 적합한 교육이 요구되는 상황
- 재학생들에 대한 영향: 변호사시험 합격이라는 단일한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학교생활
- 초시 불합격자/N시생들에 대한 영향: 응시제한 제도와 결합되어 강제되는 '수험생으로서의 삶'

❗ 이 경쟁체제 속에서 누군가는 더 불리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됨

응시제한자가 경험한 다양한 어려움

✓ 로스쿨 진학 시점에 이미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경우

- 입학과 동시에 학자금 대출과 마이너스 대출을 받게 됨
- 대출금의 규모를 줄이고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근로의 병행은 학업 손실로 이어짐

“학생들 가르치면서... 저녁 시간이라 주말 시간으로... 저녁에 일을 하다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정신이 없었는지 시험시간을 착각하는 일이 한번 있었고... 점수가 안 좋게 나왔고”

✓ 임신/출산/육아를 하게 된 경우

- 출산 이후에도 계속되는 육아 부담의 문제
- 부모님 등의 조력이 있어도 불가피한 학업 손실 발생
- 동료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과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

“부모님한테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맡겨놓고 공부를 해야 되어서 아무래도 집중하기도 어렵고 또 죄송스러우니까 친구들이 독서실에 남아서 공부할 때 저는 퇴근해서 애기 찾아서 재우고 이런 식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이후의 변호사시험 준비

재학 중
초시 불합격

- 법학전문석사 학위 취득, 그러나 변호사 자격 미취득
- 변호사시험 N시생으로서 다음 시험 준비 시작

N시 불합격

- 응시제한자가 아닌 불합격자에게 요구되는 삶의 방향
- “변호사가 되거나 계속 N시생으로 남거나”

응시제한

- 제한된 응시기간으로 인하여 다른 경로 탐색 불가
- 응시제한 이후 마주하는 경력의 공백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한 N시의 어려움

불안정 노동과 수험의 반복

-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대부분 단기기간의 불안정한 노동을 통해 수험생활을 할 수 있는 비용 마련
- 이후 다시 시험 대비를 시작하고 이 과정에서 학습의 중단 경험

경제적으로 어려운 N시생의 생계 유지 방식

- 변호사시험 후부터 합격 발표 전(1월~4월)에 집중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다음 수험 기간 생활비 확보

"아르바이트를 하는 케이스들은 1월부터 4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해요... 이 부분이 N시와 초시의 격차를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 번 미끄러진 사람은 계속 미끄러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 일반화할 수는 없겠으나, 다음과 같은 응답도 있었다.

"특별 전형으로 들어온 제 동기 중에 변호사 한 명도 못 됐거든요. 경제적 배려자 전형 한 명도 안 됐습니다."

임신/출산/육아와 변호사시험 준비

수험 기간 중 학업 손실의 지속

"세 번째 시험 보기 두 달 전에 출산을 했거든요. 10월 말에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10월 말까지만 공부하고 공식적으로 조리원에 들어가서 이제 사실 조리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조리원 나와서는 공부를 못했죠. 한 한 달은 못했던 것 같아요."

응시 포기과 마지막 기회

"출산하고 육아하면서 계속 응시를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 한 번은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한 건 아니긴 한데 이제 마지막 5년 차라서 그때 안 보면 어쨌든 뭐 끝나는 거라서 한 번 남은 횟수를 봤던 것 같아요."

-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의 응시기간 예외사유에는 '병역의무 이행'만 규정
- 임신·출산은 예외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다수의 응답자들은 임신 기간과 출산 직후 기간만이 아닌 육아 부담의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

변호사시험 5회 연속 응시의 명암

- 5년으로 제한된 기간 동안에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과제는 변호사시험 불합격자의 삶의 방향을 강력하게 규정한다.
- 변호사시험 불합격자들에게 수험기간은 극도로 축소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변호사시험 대비만이 가능한 활동의 전부로 제시되는 시기이다.
- 어떠한 예상치 못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수 없는 '변시 수험생'으로서의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 '변호사시험 5회 연속 응시'는 불합격자들의 개인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정된 기간과 기회로 인하여 강제되는 측면이 있다.

"이게 5회 제한이 연속으로만 돼야 되니까... 중간에 한 번 다른 길 알아봐야 하나는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이거 계속 묶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묶이는 거죠. 5년 기간까지."

변호사시험에 일부 응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의에 의한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미응시



중대 질환

암, 뇌경색 등 중대한 질환의 발병



사고

교통사고 등의 발생



가족 돌봄

집중적 육아 또는 간병 등 가족 돌봄



심리적 충격

부모님 등의 사망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



정신건강 위협

장기간의 심리적 압박에 따른 정신건강의 위협

- 응시기간 중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도 자의에 의한 선택은 아니었다.
- 질병, 간병, 사고, 출산, 육아, 생계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응시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경우에도 대부분 5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수험 준비를 하게 된다.
- 그러나 충분한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수험 준비로는 합격을 기대하기 어렵다.

"저처럼 중간에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아프거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저라고 저희 아이가 장애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인생에 있을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가 없는 것 같아요."

응시제한이 변호사시험 불합격자에게 미치는 영향

차라리 그냥 취업이라도 해 가지고 그냥 빨리 포기해서 취업이라도 할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근데 그 5년 내에 뭔가 결과를 봐야 된다는 게 진짜 5년 동안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취업도 못하고...

제가 만약에 그런 기간 제한만이라도 없었다면, 한두 번 보고 그냥 취업을 해서 육아도 하고 아이도 좀 컸을 때 그때 이제 '나 다시 공부해 보겠다'해서 1, 2년 준비해 가지고 응시를 하면 뭐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5년, 5회의 응시제한

병역 외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예외 없이 수험생

연속 응시 사실상 강제

다른 경로를 탐색하는 것은
곧 기회 상실로 연결

삶 전체의 속박

응시제한 전에는 '끝까지 해봐야
하는' 구조

5년 동안 다른 경로의 탐색 가능성이 차단된 폐쇄된 구조

- ✓ 대부분의 응답자는 응시기간 동안 다른 경력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탐색하지 못하였고 계속 시험 준비 상태를 유지하였다.
 - 합격하여 변호사로서의 경력을 시작하는 경우는 다행
 - 응시제한자가 되는 경우 나이는 많아지지만 그 기간 동안 아무런 경력을 쌓지 못한 일종의 공백기간

"만약에 제가 오탁 제도가 없었으면 그냥 경제 활동하면서 좀 우울증 풀리는 것도 기다리고 나중에 봤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굉장히 힘들었고 오히려 제 주변에 오탁자들을 봐도 나이 때문에 취업도 잘 안 되고... 낭인을 방지한다고 하는데... 그 낭인이 방지된 게 아니라 저는 그 8년 동안 취업을 못 했거든요. 오히려 낭인이 될 리스크가 더 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 ⊗ 시험 준비 기간 동안 다른 경력을 탐색하거나 준비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고, 갑작스러운 응시제한 이후 새로운 경로를 모색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과 긴밀하게 연결

단일한 경로의 속박과 삶 전체가 유예되는 경험



단일한 삶의 경로 강제

- 응시기간 제한은 역설적으로 응답자들에게 사실상 그 기간 동안 단일한 삶의 경로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 제도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삶 전체가 유예되는 경험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냥 쫓기듯이 (시험응시) 했거든요. 쫓기듯이 막 하고 마지막에 또 하고."

응시기간 만료 후의 역설적 해방감

- 일부 응답자들은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족쇄에서 풀려나는' 기분을 느낀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오히려 속은 좀 후련했던 것 같아요. 이거에 얽매었는데 그 얽매인 게 사라지니까 속은 좀 편하더라고요... 속상하긴 해도 후련한 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속박에서 풀려났으니까"

응시제한 제도가 유발하는 사회적 낙인 효과

- 응답자들은 공통적으로 응시제한 제도가 일종의 사회적 낙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잔인한 제도... 어떤 낙인이 찍혀 있는 사람 같아요. 오탈자라고 하잖아요... 다른 시험들은 준비를 하다가 관두면 그냥 나는 준비를 해봤는데 맞지 않아서 아니면 몇 번 떨어져서 관뒀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고 그냥 오탈자인 거죠...”

“지금 이 나이에 붙는다고 해서 인생이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오탈자를 굳이 만드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굳이 왜 오탈자라는 낙인을 찍어 가지고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그냥 그 취지 자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로스쿨 졸업생들이 다 이제 변호사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응시할 수 있는 사람과 응시할 수 없다는 게 완전히 신분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응시를 못한다는 거는 되게 큰 낙인이 되는 거죠.”

응시제한 제도가 없었다면 어떤 경로를 걸었을까

- 응답자 중 일부는 응시제한 제도가 없었다면, 먼저 취업을 하고 경제적 여건을 마련하거나, 질병을 치료하거나, 가족을 돌본 후에 다시 기회가 될 때 변호사시험 대비 공부를 하였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한 세 번 치고 성적 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다른 길로 갔을 수도 있고 다른 길로 가서도 미련이 남으면 다시 와서도 볼 수 있고... 사법시험 때는 저도 그게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건 5년 하니까 솔직히 한 번 떨어지고 나면... 오탈에 대한 부담이 바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저처럼 형편 어려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른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도 알바를 하든 공장을 가든 일을 해서 돈을 모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학원을 가서 준비해서 합격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변호사 시험 그게 아예 안 되잖아요. 이게 무조건 쪽 가다 보니까 좀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없는 게 그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응시제한 제도가 없었다면 어떤 경로를 걸었을까

“이게 그냥 풀어두면 그 정도로 많이 응시를 하지 않을 텐데 사실 그 중간에 이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오히려 그냥 5년을 묶어두는 거지... 이걸 흘뜨리면 오히려 그냥 다른 일을 하다가 나이 먹으면 다시 시험을 볼 엄두가 나지 않거나 자연스럽게 되고... 그리고 로스쿨 졸업생들의 그런 다양한 직역에 오히려 진출을 해서 네트워크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완전히 낙인, 로스쿨 구성원에서 제외가 되니까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자원이 낭비고 이 제도가 진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응시제한이 없더라도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시험에만 매달릴만큼 어리석지 않거든요.”

- 응시제한 제도는 개인적인 사유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 차단
- 응시를 조기에 중단한 로스쿨 졸업생들의 다양한 직역 진출 가능성을 사실상 봉쇄
- 오히려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 초래

변호사시험의 폐쇄적 구조

사실상의 응시 의무

[불합격자 = 수험생 → 합격자 또는 응시제한자]

비변호사 법학전문석사로서의 독자적 전망을 폐쇄

중간 경로 없음

극도로 제한된 예외 사유

다른 경력 탐색의 가능성 차단

최종적으로 두 가지 결과만 존재

합격자 또는 응시제한자, '성공' 혹은 '사회적 낙인'

불합격자에게 하나의 경로만을 허용, 경로에서 이탈하는 순간 '응시제한자'

응시제한 제도 폐지에 관한 응답자들의 의견

폐지 찬성 의견

- 응답자 다수는 응시제한 제도 자체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답변
- 수험생의 자신의 인생경로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
- 미국, 일본 등과 달리 채용시 자격을 얻기 위한 우회로가 완전히 봉쇄되어 있음
- 응시제한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오히려 과다
- 엄격한 합격자 수 제한과 결합되어 모순이 가중

“오탈 제도 폐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무조건 폐지를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합격률을 올려야 되는 거죠. 이게 자격 시험이라고 얘기했거든요.”

“7조 전체를 다 폐지를 시키고... 자격시험화를 하면 자연스럽게 일은 다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 제도를 손보는 방법은 이제 전면 폐지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응시제한 제도 폐지에 관한 응답자들의 의견

예외사유의 확대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 임신/출산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또한 사고, 질병, 돌봄 등의 예외사유가 우선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장기적으로는 철폐가 맞는 것 같고요... 과도기적으로 예를 들면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몸이 아프고, 사고가 났다거나 아니면 자녀 케어, 임신 중... 이런 분들은 우선 예외가 인정이 되면... 이제 이걸 사실 비용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동의만 되면. 사회만 동의만 되면.”

“임신 출산은 예외로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예외사유 확대 방식의 제도 개선에는 명확하게 의견 대립이 존재

- 예외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 구제의 범위 문제와 직결
- 사고, 질병, 경제적 상황 등의 사유를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지?

응시제한 제도 폐지에 관한 응답자들의 의견

- 응시기간 제한의 우선적 폐지를 대안으로 말하는 응답자들도 많았다.

"마음 같아서는 응시제한자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그걸 남기고 싶으면 그냥 횟수 제한을 하고 연도 제한은 없애야 할 것 같아요."

"살다 보니까 저희도 알 수 없이 이제 뭐 제가 아프기도 하고 배우자 부모님 아이가 아프기도 하고 여러 정말 돌발 상황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사실 변호사 시험 응시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아무래도 뭐 30대 40대 많고 일찍이 어야 20대이다 보니까 이런 여러 이렇게 변수들이 많이 나타나고는 하는데 5회 제한을 꼭 남겨야 한다면 5년 제한이라는... 제한만이라도 풀어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미응시 = 기회 상실

응시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미응시 자체가 기회 상실로 이어지는 구조

수험 준비에 몰입 강제

응시기간 동안에는 다른 경력을 가지기 어렵고 계속 수험 준비에 몰입해야 하는 상황

응시제한 제도의 부작용: 봉쇄효과

- 상당 수의 응답자들은 응시제한이 없었다면, 2-3회 응시 이후 일단 취업을 하여 소득활동을 하고, 여건이 갖추어진 후에 수험준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 장기간의 경력 공백 없이 다른 경력을 가지게 되고, 그 경력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경제적·사회적 안정을 찾게 된다면, 5회 응시제한에 이를 때까지 계속 응시를 하지 않게 될 가능성도 크다.

"...이름하여 오탈이라고 하는 제도가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더 크게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는 많은 오탈자가 있거든요. ...정말 훌륭한 친구들이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기회가 없다는 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사회적으로 큰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대안적 경로 탐색 차단

자연적 이탈의 차단 효과
다양한 직역으로의 진출 어려움

개인적 매물 비용 증가

로스쿨 3년 + 사실상 응시하지 않을 수 없는 기간 추가 = 7~8년 경과

사회적 비용 증가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더 크게 만드는 역효과

개방적 구조의 필요성

현재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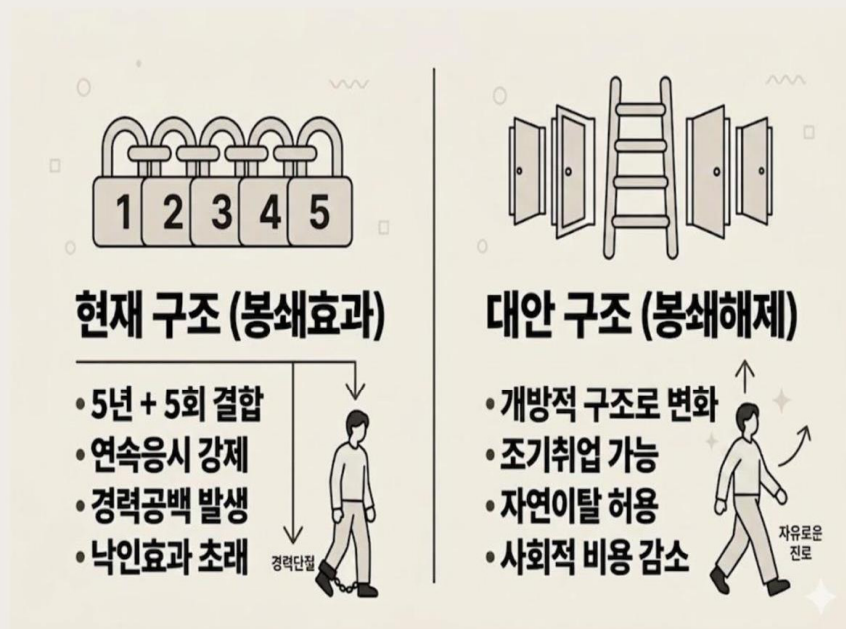
- 초시 불합격 후 일정 기간 다른 경로 탐색 가능성 봉쇄된 수험 생활 지속
- 응시제한 제도로 인한 낙인효과 발생
- 응시제한 이후 경로탐색 어려움 가중

필요한 변화

- 응시제한 제도가 없어지는 경우, 각자의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일정 기간 응시를 중단할 가능성이 생김
- 응시기회를 남긴 상태에서 조기에 취업을 할 수 있음
- '응시제한자'라는 사회적 낙인 없이 경제 활동을 이어갈 가능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변호사시험 불합격자라고 하더라도 응시제한이 아닌 상태에서 새로운 경력을 탐색할 가능성과 경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

☑ [불합격자 = 수험생 → 합격자 또는 응시제한자]라는 폐쇄된 구조에 변화를 주는 방식이 필요하다.



응시제한 제도가 가지는 봉쇄 효과에 대한 진지한 인식과 대안의 모색이 필요

변호사시험이라는 블랙홀에서 벗어나기

1 제도적 구조의 문제

모든 응시자의 절대적 수준이 높아져도 매년 200여명의 응시제한자가 필연적으로 발생

2 교육과정에 대한 영향

법학전문대학원이 변호사시험 학원처럼 운영되고, 또 그렇게 운영되기를 요구받는 현실

3 재학생들에 대한 영향

변호사시험 합격이라는 단일한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학교 생활이 강요됨

4 N시생에 대한 영향

응시제한 제도로 인한 다른 인생 경로의 차단
자발적 미응시가 불가능한 폐쇄적 구조로 응시제한자에 대한 낙인효과 발생

☞ 이 연구는 특정한 대안이 옳다고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일단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 응시제한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법학교육과 법학전문대학원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시제한자 면접 연구팀

공두현 · 김우석 · 김지희 · 박규리 · 전시연

도움 한승호

발표 5

한국의 법학 교육과 법조인력양성체계의 명암: JD advantage를 중심으로

이재협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 개

■ 기본 사항

성명	이재협 교수	
소속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공 및 연구분야	법인류학, 미국법	

■ 학력

학력	○ Vrije Universiteit-Amsterdam(Certificate)(1997.04.) ○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법학박사(J.D)(1997.05.) ○ University of Pennsylvania 미국학과 미국학 박사(Ph.D)(1994.08.)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인류학사(1988.08.)
----	--

■ 주요 경력

현직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10.04.~현재)
주요 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2007.10.~2010.03)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9.04.~2007.09)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통상전문관(Legal Counsel)(1998.06.~1999.06)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조교수(1997.03.~1999.03) ○ 미국 뉴욕주 변호사 협회 회원(1998.11.~현재)

한국의 법학교육과 법조인력 양성체계의 명암: JD Advantage를 중심으로

이재협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문제 제기 및 연구 진행

- 로스쿨 졸업생 중 상당수가 변호사시험 불합격 및 응시제한 상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음
 - 이들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마친 우수한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관련 지역에서 전공과 연관되는 일을 수행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음
 - 이는 응시제한자들의 단순한 취업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배제 및 인력낭비의 문제로 연결됨
- Q1: 현재 국내 비법률가 JD 인력의 취업 사례가 있는가?
- Q2: 향후 국내 비법률가 JD 인력의 활용 가능성은 어디에 있는가?
- **법률 수요자 연구**
 - 로펌(대형, 중형), 사기업(대형, 중형), 금융기관, 정부, 공공기관, IT/벤처 인력 채용 관계자 (13명) 면접 조사
 - 주요 질문
 - 비변호사 로스쿨 졸업생 채용 경험 여부, 우려되는 점, 채용 과정 및 역량 평가
 - 비변호사 법률 관련 수요 여부, 직무, 영역 등
 - 비변호사 로스쿨 졸업생 채용에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에 대한 제언 또는 기타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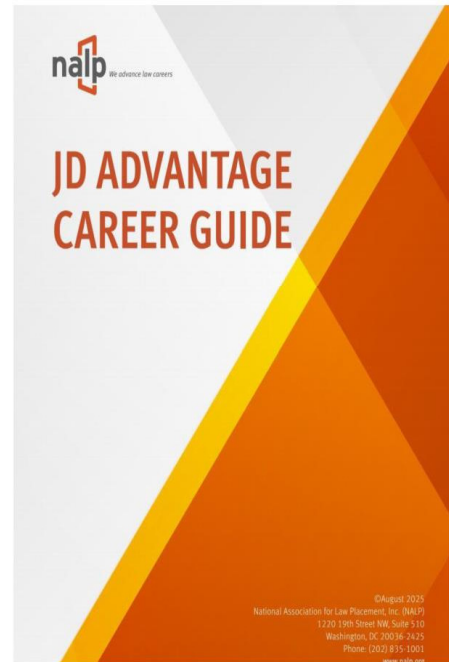
미국의 JD Advantage란?

• JD Advantage

- JD 학위는 있지만 변호사 시험을 보지 않거나, 합격해도 전통적인 법정 업무를 보지 않고, 법률 지식을 활용하는 비전통적 직종에 종사하며 JD 학위를 활용하는 경우
- 법학 교육에서 쌓은 분석력, 글쓰기, 협상 능력 등을 다른 분야에 적용
- 미국의 경우 변호사 시험 불합격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이러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보다 자발적으로 시험을 보지 않고 JD Advantage 직종을 선택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짐

• 대표적인 JD Advantage 직종

- 준법/윤리
- 계약 관리
- 기업지배구조/지속가능성
- 데이터 프라이버시/보안
-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 대관업무
- 인사 및 노무
- 보험/리스크 관리
- 지재권, 기술, 라이선싱
- 법무 운영, 혁신, 기술
- 규제 업무



미국의 JD Advantage Job 취업 통계

Table 1. JD Advantage Jobs, Classes of 2006 – 2024

Class Year	% of Graduates for Whom Employment Status was Known Employed in JD Advantage Jobs	Total # of Jobs Taken	Total # of JD Advantage Jobs	% of Jobs that were JD Advantage	# of JD Advantage Jobs Obtained in Business
2024	6.9%	35,335	2,615	7.4%	1,163
2022	9.2%	32,318	3,214	9.9%	1,501
2020	10.4%	29,382	3,465	11.8%	1,494
2018	12.5%	29,953	4,178	13.9%	2,020
2016	14.8%	31,354	5,311	16.9%	2,537
2014	14.8%	36,350	6,228	17.0%	3,118
2012	13.3%	37,538	5,877	15.7%	2,628
2010	10.7%	36,043	4,387	12.2%	1,591
2008	8.1%	36,497	3,277	9.0%	1,473
2006	7.9%	36,465	3,194	8.8%	1,531

Note: For the years 2006-2010 JD Advantage jobs were referred to as JD Preferred. The category was renamed to JD Advantage starting with the Class of 2011.

Source: NALP's Employment Report and Salary Survey, Classes of 2006-2024

- 미국의 JD Advantage 직종의 압도적 다수(86%)는 장기적이고 정규직인 양질의 일자리임
- Q: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JD Advantage가 작동하고 있는가?

면접 결과: 국내 비법륵가 JD 인력 취업 관련

- 13개 면접 중 JD advantage가 발견된 기관은 1곳
 - 비법륵가 JD (응시제한자) 채용하고 있는 곳은 사기업(중형) 1곳
- 비법륵가 JD를 채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극적 채용 의사가 있는 기관 2곳
- 나머지 기관들은 모두 변호사 이외의 채용 사례가 없고 별도의 채용 계획도 갖고 있지 않음

1개 기관 제외하고 비법륵가 JD 채용 전무

- 로스쿨 이전 법대 졸업생들의 취업 경로가 점점 소멸됨
 - 로펌 · 대기업 법무의 비법륵가 연구원 · 패러리겔 자리 사라지고 변호사 중심으로 대체
 - AI 도입 → 반복적 리서치 업무 감소 (단, 리겔 AI 테크 관리자 수요는 남아있을 듯)
- 채용구조의 이중 트랙 — 비법륵가 JD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애매한 인력”
 - 기업 채용: 변호사 트랙 vs 일반직 트랙 (법전문 트랙 별도 없음, cf. 일본)
 - 일반직 지원 시 높은 연령·경력 미비로 공채 경쟁에서 구조적 불리

➡ 실질적 JD Disadvantage 발생

“전에는 법대생들이 사법시험을 봐야 하는 프레셔가 지금처럼 강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법전문 나오면 무조건 변시를 봐야 한다는 프레셔가 너무 강하다”

“과거 학부법대보다 3년을 더 공부하고, 교육과정도 나아졌고, 실무가들도 많이 투입되었고, 시스템도 점점 좋아지고 있음에도 아웃풋에 있어서는 과거만 못한 이유는 법조 주류 이외의 다른 파이프라인이 없어진 것이 큰 이유이다.”

- 대형로펌 변호사

발표 5. 한국의 법학 교육과 법조인력양성체계의 명암: JD advantage를 중심으로

The image shows three screenshots of a job posting on the Indeed website. The job is for '기린 홀딩스 주식회사' (Kirin Holdings Co., Ltd.) and is titled '법무 코스 (조기 전형 (법과 대학원생용))' (Law Course (Early Recruitment (Law and Graduate Student Use))).

Job Details:

- Location: 〒164-0001 도쿄도 나카노구 나카노
- Salary: 월급 293,000엔 ~ 350,500엔
- Hours: 9:00~17:30 실동 7.5시간/일 플렉스 근무 있음 ※ 근무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Job Content:

기린 그룹의 국내외 경영이나 사업에 대해 법적 관점에서 조언 지원을 실시하는 데 종사하는 코스. 구체적으로는, 경영이나 사업에 관한 계약 심사, 리갈 리스크 컨트롤-컴플라이언스,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M&A·얼라이언스, 분쟁 해결, 상표 등 표시 심사 등에 관한 법적 지원을 실시합니다. 법무의 전문이면서도, 글로벌하게 기린그룹의 경영이나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폭넓은 관점에서 조언이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인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과

법과대학원생

응모 자격

2026년 3월까지 법과대학원을 수료 예정의 분, 졸업생의 분(사법시험의 합격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전국 전근 가능한 분

주요 초기 배포 대상

기린 홀딩스 법무부(근무지:기린 그룹 나카노 본사)

기타

입사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법 수습에 가는 분→2027년 4월
 ・사법 수습에 갈 수 없는 분→2026년 4월

초임급

학부졸 293,000엔 / 석사졸 311,500엔 / 박사졸 350,500엔

*2026년 입사자의 실적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6년제대학(약학 등)을 졸업하시는 분은 석사졸과 같은 초임급입니다.

다양한 수당

시간외 근무 수당, 휴일 출근 수당, 통근 수당, 재택 근무 수당 등

제도

응모처로 진행

JD Disadvantage 발생 요인 ①

- 법학전문석사(JD)의 독자적 가치가 시장에서 인정되지 않음
 - 자격증 만능주의: JD = 변호사 자격과 결부되어야만 인정
 - 변호사 = 신뢰 가능한 신호 (전문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네트워킹 등)
 - JD 학위 단독으로는 전문성 신호 기능 없음
 - MBA보다 진입 장벽이 높은 고학력 학위(문과 최상위)임에도 시장에는 JD 고유 가치에 대한 인식 부재

“개발자면 프로젝트, 마케터면 포트폴리오 등이 능력을 입증할 자료가 되는데, 비법조인 입장에서 법무를 잘 한다는 것을 어떻게 측정할지 매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 자격은 손쉬운 실력의 지표가 된다.”

“MBA 과정은 졸업할 때 자격증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취직은 알아서 하고, 네트워킹도 스스로 쌓아야 하고, 학비는 엄청 비싸지만 그래도 브랜드 파워는 인정되거든요. 거기에 비해 JD 학위는 그만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 대기업 법무실 변호사

JD Disadvantage 발생 요인 ②

• 법률수요자의 정보·인식 부족

- 응시제한 제도 자체를 모르는 채용 담당자 다수, 비법률가 JD를 '미취업자' 혹은 '낙인 대상자'로 오인
- 로스쿨 배출 인재의 역량·활용 방식에 대한 구체적 아이디어 없음
- 이러한 정보의 공백이 채용 회피로 이어짐

“응시제한자/비법률가 JD를 채용해 본 적이 없어서 그들이 어떤 스킬을 갖고 있는지, 어떤 대우를 해줘야 하는지, 어디에 쓸 지 애매하다. 법전원을 나오면 당연히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소기업의 오너들은 법에 대한 이해가 일단 부족하고, 변호사에 대한 일반적 인식 때문에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법전원 출신자에 대해 상당한 편견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 대기업 법무실 변호사

JD Disadvantage 발생 요인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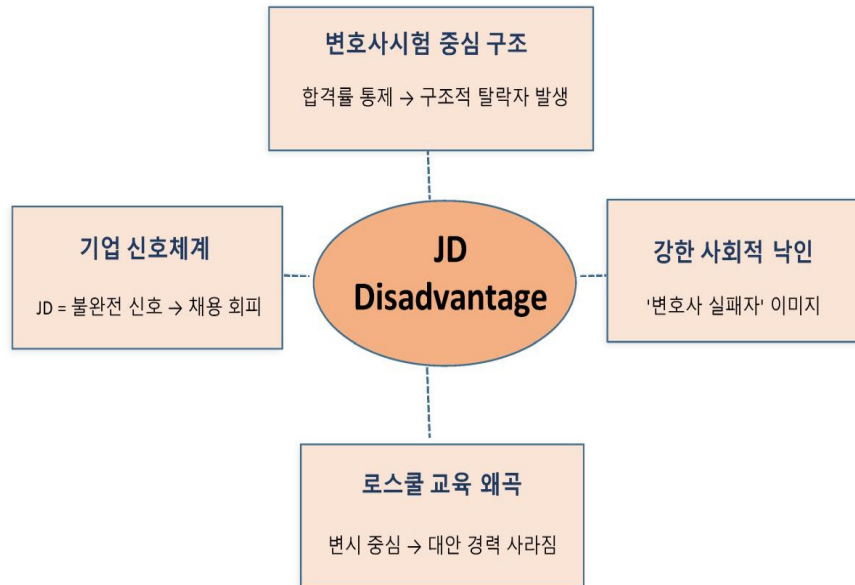
• JD의 전이가능한 역량(transferable skill)에 대한 교육 부재

- 법전원 교육은 변호사시험 과목 중심
- 전이가능한 역량 교육은 법전원 교육의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학교가 그것을 사회에 충분히 알리려고 노력하지도 않음
- 로스쿨 교육을 통해 함양된 전문성이 변호사 자격 밖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보여주지 못함

“법전원 교육이 일반 기업이나 정부 혹은 다른 분야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민형사법을 이해하는 게 어떤 transferable skill을 주는지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충분히 알려주거나 혹은 사회에 홍보하지 않았던 것 같다. JD 과정에서 뭘 배우고 그것이 회사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는데 그걸 회사에서 먼저 굳이 알거나 익힐 필요가 없다.”

— 대기업 법무실 변호사

JD Disadvantage의 구조



응시제한자 채용 사례 - 코스닥 상장 증견기업 A사

- 채용경로: 경력직 공채를 통해 법무실에 응시제한자 정식 채용
- 법무실 규모: 11명 중 변호사 2명
- 처우: 법학전문석사 소지자 기준, 변호사 대비 약 10% 낮은 급여
- 직무: 법무, 계약 검토 및 컴플라이언스 수행
- 성과 및 역량: 소송 대리를 제외한 전반적인 실무 역량은 변호사와 대등
 - 향후 동종 인력의 추가 채용 의향 있음
- 잠재 활용 영역: 법무팀 외 기획·인사노무·재무에서도 경쟁력 있음

“법전원 나왔으면 일단 공부를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뭐 변시에 떨어지긴 했지만 실 력에 있어서는 합격한 변호사랑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외의 요소들, 즉 서비스 정신이나 성실함 이제 그 런 것들이 이제 괜찮은 분들이라면 좀 가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회사 그룹 내에는 여러 자회사가 있는데 법무팀 업무는 업무의 종류에 따라 배분하지 않고 각자가 맡은 회사에 따라서 배분되기 때문에 특별히 변호사만 소송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전원 졸업자를 별도로 채용하는 것은, 과연 얼마나 지원할지 몰라서, 그리고 숫자가 소수일 것 같아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앞으로 우리회사에 지원자가 좀 늘어난다면 별도 채용할 생각도 있습니다.”

비법률가 JD에 대한 적극적 수요 사례 - 대형 금융기관 B사

- 법무실 규모: 34명 중 변호사 22명 (준법지원실 60~70명 규모로 별도)
 - 법전원 3년 이수시간 전부 호봉산정에 반영
- 비법률가 JD 취업 가능 경로: 공채 (지원한 경우 없음)
 - *변호사가 공채로 지원하여 법무실이 아닌 일반직으로 취업한 경우 있음
- 기관내 비법률가 JD 수요가 매우 큼
 - 법전원 도입 후 법학부 축소 → 법률지식 있는 일반직원 채용이 어려워진 점이 아쉬움
 - 영업현장 및 실무금융 이해도와 법학 겸비한 인재를 선호함
 - 변호사: 전문계약직 / 공채인력: 정규직 → 응시제한자가 공채로 입사한다면 변호사와 급여 차이 거의 없음

“은행에서는 영업점이나 일반 부서에서 근무한 실무경험이 중요한데 거기에 법학지식이 좀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은 은행 업무도 알고 법학 지식도 있는 사람입니다. 은행에서는 변호사 자격이 있냐 없냐에 따라 맡길 수 있는 업무영역의 차이가 크게 없다고 봐요.”

“은행업무는 실무경험을 통해 체득한 금융에 대한 감각이 필요한데 변호사들도 그것을 익히려면 솔직히 수년 이상 걸립니다.”

“응시제한자들이 일반 부서에서 취업을 원한다면 예전에 MBA나 회계사를 따로 뿔었듯이 비법률가 법전원 졸업자들의 취업기회를 제도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The screenshot displays a mobile application interface for job searching. The top section shows a search result for 'KEB하나은행' (KEB Hana Bank) with a job title '변호사시험 탈락자도 로스쿨 출신이면 환영' (We welcome those who passed the law exam even if they failed the law school entrance exam). The bottom part shows a detailed job description for 'SM 3.0 BEGINS' with various requirements and benefits.

Job Search Results:

- Job Title:** 변호사시험 탈락자도 로스쿨 출신이면 환영 (We welcome those who passed the law exam even if they failed the law school entrance exam)
- Company:** KEB하나은행 (KEB Hana Bank)
- Location:** 공대윤 산업부 기자 (Gongdaeyun Sanbyungbu Gija)
- Date:** 2018-10-25 10:01:11

Job Description (SM 3.0 BEGINS):

- 2) 주요업무**
 - 기획/전략: 신사업, 사업계획, 전략개발, 협상 등
 - 법무: 계약서 작성, 송무 등
- 3) 모집직급: 면접 시험의**
- 4)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로스쿨 출신: 필수
 - 영어 회화 가능자 (유학 등 해외 경험자 우대)
 - 도전정신이 강한 자
 - 대인관계가 원활한 자

Additional Information:

- 사법법무 담당자 채용 (경력):**
 - [담당 업무] 이원 업무를 담당함
 - 사법법무 담당 또는 법무 담당
 -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 경험 보유자 우선
 -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보유자 우선
 - 소수 우대 가능
- [필요 요건] 이원 분을 찾고 있어요**
 - 법학 관련 학위를 소지한 자
 - 2018년 10월 25일 현재 법학 관련 분야 실무 경험 보유자 우선
 - 2018년 10월 25일 현재 법학 관련 분야 실무 경험 보유자 우선
- [우대 요건] 이원 분을 찾고 있어요**
 - 로스쿨 졸업 또는 법학 관련 학위 보유
 -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 경험 보유자 우선
 - 2018년 10월 25일 현재 법학 관련 분야 실무 경험 보유자 우선
- [필요 요건] 이원 분을 찾고 있어요**
 - 법학 관련 학위를 소지한 자
 - 2018년 10월 25일 현재 법학 관련 분야 실무 경험 보유자 우선
 - 2018년 10월 25일 현재 법학 관련 분야 실무 경험 보유자 우선

Buttons:

- 즉시 지원 (Apply Now)
- 홈페이지 지원 (Support Center)

JD Advantage 정착의 가능성 찾기

• 민간 부문: 비용 효율성 + 높은 충성도

- 실무 가성비: 능력은 합격 변호사에 준하면서도 낮은 급여로 채용 가능
- 변호사 대비 이직률 낮음 → 장기 재직 선호 조직에 유리
- 소송 외 직무(노무·인사·기획 등) 전반에서 역량 발휘 가능
- 스타트업, IT/플랫폼, 금융 등 유망 분야

“변호사들의 이직은 다른 직군에 비해 좀 잦은 편이라 오래 회사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을 더 선호합니다.”
 “로열티도 있고 능력도 뛰어난 사람을 변호사보다 더 낮은 임금으로 고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회사 입 장에서도 나
 뵈 게 없을 것 같습니다.”

• 공공 부문: 정책 수요 + 규제·조정·커뮤니케이션 역할 확대

- 역량, 직무 중심 채용: 블라인드 면접 확산으로 자격증 편견 낮추고 역량 갖춘 비법률가 JD 수용 가능
- AI 시대 — 사람 대면·경험·네트워킹 중심 업무에서 공공부문이 오히려 기회 많음

“AI 시대에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로는 살아남기 힘들고, 결국 사람을 대하고 경험을 쌓고 네트워킹이
 되는 일을 찾아야 하는데 오히려 퍼블릭 쪽이 비법률가 JD에게 취업기회가 더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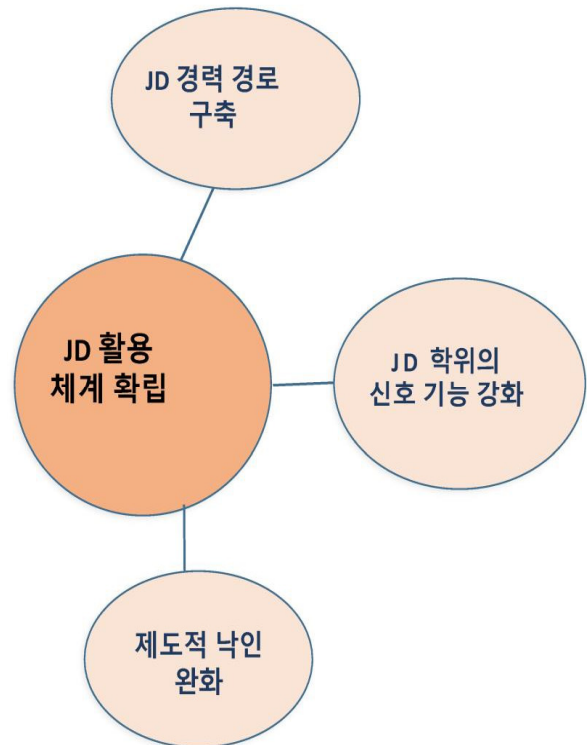
- ☛ 시장 전체로는 비법률가 JD들을 못 수용하지만, 특정 영역에서는 이미 수용할 여건 형성됨
- ☛ 수용가능한 영역: 소송 비중 낮음, 사업지원형 업무, 비용 민감 조직, 비법률가 JD 채용 경험 있는 조직

법전문 교육과 법조인력 양성체계의 과제

‘얼마나 많은 변호사를 배출하느냐’



‘양성된 법전문가들을 법률시장에서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제안

①

• JD Advantage 직역 제도화

- 국내 JD advantage 직군을 조사, 해당 기관에 홍보
- 기업, 공공기관이 이해할 수 있는 직무명, 역량표, 채용모델 제시
 - 단순 '직역 만들기'는 실패 가능성 높음.
 - 법률수요자에 이득이 되는 구조로 시장 친화적 설계 필요

• 정부, 공공부문 JD 채용 확대

- 법제처 모델 확산('변호사 자격'→'법학전문석사 소지')
- 중앙부처·공공기관 JD 트랙 구축
- 입법·정책 지원 인력 확대

- 👉 공공부문에서의 'paralegal 문화' 확산 필요
 - 연구, 입법 지원, 유권해석, 정책리서치

"입학 정원과 변시 합격률을 통제하는 정부가 응시제한자 문제의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것은 무책임하다 고박에 말할 수 없다. 관계부처와 법전문협의회가 협력해서 응시제한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 중소 로펌 변호사

법제처공고 제2026-65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5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법제처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4월 29일
법제처장

1 임용예정인원 (3개 직위군, 총 7명)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자문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4명	임용일부터 2년	법제자문1담당관실(세종)
				법제자문2담당관실(세종)
				경제법령해석1과(세종)
				사회문화법령해석과(세종)
심사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2명	임용일부터 2년	행정법제국(세종)
				경제법제국(세종)
교육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1명	임용일부터 2년	법제교육과(충청남도 태안)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6.6.4.) 기준]

응시자격요건	
자격증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경력	경력①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경력② 6급 또는 6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경력③ 학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관련분야 : 법제, 법무, 송무, 행정심판
학위	학위①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학위②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위③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 법제, 법무, 송무, 행정심판 관련분야 학위 : 법학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은 "붙임2" 참조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자격증, 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 자격증, 경력, 학위 요건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요건을 반드시 1개 선택하여 응시
예) 자격증 / 경력1 / 경력2 / 경력3 / 학위1 / 학위2 / 학위3
→ 자격증, 경력 및 학위 요건을 각각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
- ※ 응시자격요건 중복 선택, 미선택, 착오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6.6.4.예정) 기준으로 판단

제안

②

• 로스쿨 교육의 방향전환 및 진로 지원 개편

- 비법률가 JD career track
- “오탈자,” “응시제한자” → “JD Advantage” 용어 확산
- 비즈니스/정책교육, 커뮤니케이션/협상 스킬 강화
- AI 시대의 패러다임 전환에 부응하는 법전문인력 양성(e.g. 공감능력)
- 산업부문, 정부 및 공공부문 연계 인턴십
- 법전문협의회를 통한 비법조 직군 취업통계 집산 및 취업 가이드북 발간

👉 로스쿨은 ‘변호사 자격 취득기관’이 아니라 ‘법적 사고와 규제 대응 역량을 가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재브랜딩할 필요

👉 법조 이외의 다른 경력 파이프라인 복원 필요

→ 이를 선도하는 법전문에 인센티브 부여(법전문 평가기준에 반영 등)

👉 비법조의 다양한 분야에 소신껏 진출할 수 있는 물길 터줘야

→ 그래야 일찍 해당 분야에서 커리어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음

→ 그럼에도 차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 있음

- 여러 이유에서 향후 커리어에서 자격이 필요한 순간이 올 수 있음)

法科大学院協会 JAPAN ASSOCIATION OF LAW SCHOOLS

법학전문대학원 협회에 대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소개 이벤트 수료생 인터뷰 공통 성취도 확인 시

수료생 직군 위원회

★ > 수료생 직군 위원회

설치

2008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협회 전문위원회인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생 취업 분야 문제 검토위원회'로 설치
2010년 12월	'수료생 직역위원회'로 명칭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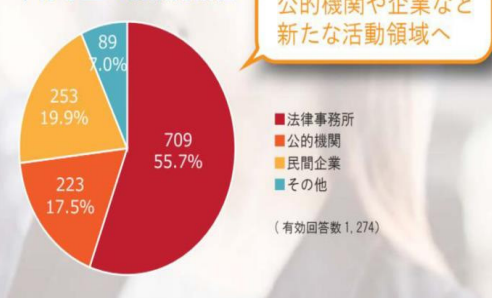
위원회의 임무

1.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이 그에 걸맞은 전문직으로서 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직무 영역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검토한다
2.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취업 분야 확대를 위해 경제단체, 일본변호사연합회, 관련 법률 전문직 단체, 법무부, 문부과학성, 인사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위원회의 활동 개요

- 기업 법무 심포지엄 개최
- 관공서 업무 설명회 개최
- 수료생의 취업 분야 확대를 위한 경제계 및 관공서와의 협의
- 수료생의 취업 및 취업 동향 조사

▼修了生の就業先業種



“기존의 법조인상과 다른 새로운 경력을 개척한 수료생들의 활약 덕분에 법과대학원과 그 수료생들의 존재는 사회에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제는 그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법조계뿐만 아니라 수료생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기관이 늘어나고 있어, 수료생들의 활약 무대는 다양성을 더해가고 있다.”

- < '법과대학원' 과 '당신' 이
열어가는 새로운 법률가의 미래 >

일본 문부과학성 (2016)

결론

- 우리나라에서는 상당수의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고급인력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변호사시험 중심의 제도 설계와 자격 중심의 노동시장 신호체계가 결합하여 형성된 구조적 결과로 볼 수 있음
-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법조직역 이외에도 법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영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응시제한자를 비롯한 비법률가 JD 인력이 적절히 연결·배치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번시불합격자와 응시제한자는 반복된 실패 경험, 심리적 위축, 정보 단절 등으로 인해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탐색하지 못하며, 직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역량을 개발할 기회 또한 충분히 갖지 못한 채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 반면 국내에서도 일부 공공·기업 영역에서는 비용, 효율성, 유연성 등을 기반으로 비법률가 JD 인력의 활용 가능성(JD Advantage)이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법학교육과 법조인력양성체제의 방향은 비법률가 JD 인력을 단순히 '구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전문성과 법학 교육의 가치를 사회 각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경력 경로와 제도적 연결 구조를 적극적으로 설계하는 데 있어야 함

토론

“변호사시험 제도의 실행과 응시제한자의 경험을 통해 본 법학교육의 미래와 비전” 심포지엄 종합토론문

장혜진 교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제도의 실행과 응시제한자의 경험을 통해 본 법학교육의 미래와 비전” 심포지엄 종합토론문

장혜진 교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들어가며

먼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및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주최·주관하고 법무법인 (유한) 율촌에서 후원한 본 심포지엄은 지난 15년간 변호사시험을 치르면서 그동안은 제도의 사각처럼, 또는 제도의 시행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처럼 여겨졌던, 응시제한제도 자체의 문제점은 물론, 소위 ‘오탈자’라 불리는 응시제한자들이 응시제한으로 인하여 실제로 어떠한 상황을 겪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전해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소규모 지방 로스쿨 교수 13년 동안 재직하면서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힘들게 공부하면서도 변호사시험의 낮은 합격률로 인해 오랜 기간 고생하는 모습을 옆에서 많이 지켜봐 왔습니다. 재시에 응시하는 학생들에게는 격려의 연락을 하기도 하였지만, 횡수가 늘어날수록 선뜻 연락을 하기 어려워졌고, 비자발적으로 응시제한이 된 학생들에 대하여는 참으로 마음 아파하면서도 달리 어찌할 수 없다는 생각만을 하고 있었는데, 발표문들을 들으며 그들의 아픔이 생생하게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 같아 참으로 미안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저는 감정적 공감에 머무르기보다는,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바라보면서, 법학교육의 미래라는 보다 구조적 관점에서 문제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2. 로스쿨 제도의 성과와 구조적인 문제점

로스쿨 제도는 과거의 사법시험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체계적 교육과 실무 역량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변호사시험 역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이라면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되도록 하는 것, 즉, 자격시험으로 운영을 하자는 것이 제도 시행 당시의 목표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는 지극히 당연한 논리이기도 합니다. 사법시험 제도와 달리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는 구조에서, 로스쿨

입학은 곧 자격 취득을 전제로 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응시자 대비 합격률 50% 초반대 정도의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결정되면서 이미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였습니다. 또한 본래적 제도의 취지와 달리 낮은 합격률의 선발시험으로 운용되면서 졸업 후 5년 동안 5회의 기회만을 부여받게 되는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최종 이탈 역시 꾸준히 쌓일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으면 로스쿨에 오라고 하면서, 일단 로스쿨에 와서 열심히 공부해도 당회차 시험에서는 무조건 50% 정도는 떨어지며, 5년 내에 합격을 못하면 영원히 응시 자격조차 사라지는 무서운 시험은 우리나라에 단 하나만 존재합니다.

결국 변호사시험은 강력한 선발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정한 합격률 통제와 응시횟수 제한 제도는 불가피하게 구조적 긴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스쿨이 교육기관인지, 사실상 예비시험기관인지에 대한 질문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현실 속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소위 주요 로스쿨이나, 그 로스쿨의 학점 좋은, 대형 로펌에 조기 컨펌된 극소수의 원생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로스쿨이 사실상 시험을 위한 학원처럼 변형되어 운영되고 있고, 학생들은 학원 수업과 동영상 등을 통해 오로지 수험 적합한 목표를 최우선으로 두고 공부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 있는 분은 계시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현실은 오늘 발표하신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경제적인 문제가 합격 당락과, 이탈자로 가게 되는 근본적인 요인 중 하나로 작동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3. 응시제한자들의 경험이 던지는 묵직한 의미와 개선 방향

가. 응시제한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15회 변호사시험까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응시제한자는 10기까지 원생들에게서 발생하게 됩니다. 대상자는 총 1,918명이니 연도별 응시제한자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 기수별로 190명 정도로 로스쿨 정원의 10%에 가까운 인원이 매년 응시 자격 박탈을 받게 됩니다. 이들 중 30분이나 적극적으로 인터뷰에서 참여하여 들려준 목소리는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들이 느낀 개인적 차원에서 삶의 단절과 낙인,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 단 5년간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이 평생을 좌우하는 불공정, 3년간 로스쿨에서의 학업의 무용성 등등은

개인적으로 감수하라고 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난 것이며, 교육제도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고통의 목소리가 더욱 남달리 분명하게 들립니다.

나. 개선 방향

(1) 로스쿨에서의 경제적 지원 문제

우지숙 교수님이 발표하신 자료에 보면, 오탈의 원인으로 시작점에서의 경제적 자본 격차와 부채의 무게 문제가 컸다는 점은 분명히 현실적으로 학업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응시제한자와 통제그룹 사이에 장학금 수혜 비율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은, 현재의 장학금 제도가 등록금 감면 수준에 머물러 있어 생활비 부담까지 실질적으로 완화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경제적 요인이 변호사시험에의 합격 여부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단순한 학비 감면을 넘어 일정 수준의 생활보장적 지원 또는 장기 수험자에 대한 별도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문제로 이어지는 것인데, 현재의 로스쿨 제도 하에서는 별다른 대책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발전기금 등을 재원으로 한 개별적이고 추가적인 생활보조적 장학금 방식 외에 현실적인 방법은 달리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보조가 적극적으로 지원되려면, 결국 재정·형평성·정책 우선순위의 문제와 결합되어 있어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2) 응시제한 문제 - 기간과 횟수의 문제

응시제한의 문제는 졸업 후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는 응시제한 기간과 응시 횟수 모두를 교집합으로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간 산정의 예외사유로 병역만이 한정되어 강력한 제한적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비록 법정의견은 아니나, 헌법재판소 5인의 재판관이 임신·출산의 사유로 변호사시험에 제대로 응시하지 못한 변호사시험 준비생에 대해서까지 응시 기회 제한 예외조항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어(헌법재판소 2023헌마855 결정), 향후 이에 대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입법적

논의가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응시횟수와 기간 모두를 단시간에 없애는 것이 어렵고, 응시 제한의 예외 사유로 주장되는 임신·출산·질병·경제적 이유 등이 모두 현실적으로 시험 응시를 위한 준비에 몰입하기 어려운 이유를 전제로 하는 만큼, 졸업 직후 무리한 단기 몰입 압박 완화, 일정 기간 실무 경험 후 재도전 가능, 개인의 삶의 속도에 맞춘 시험 응시 기회 등을 고려하여, 과도기적으로는 응시 ‘기간’ 제한을 없애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 전문 인력 활용의 차원

오늘 발표에서 다루어진 JD advantage는 개념도 매우 신선하였고, 그에 대한 논의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advantage 가 실제로 시장에서 작용하려면, 기업·공공부문에서 법학전문석사 학위의 제도적·사회적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공감대 형성이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우선 순위가 아닌가 합니다. 이재협 교수님의 여러 가지 제안들은 활성화만 된다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법학전문석사들의 시장 진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법학전문석사들의 법조 이외의 다른 경력 파이프라인 복원을 위해 이를 선도하는 법전원에 평가기준 등을 활용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제안에 대하여는 다소의 걱정이 앞섭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법전원은 학생들의 졸업 이후의 진출 내지는 취업 활동 확대와 관련하여 안내 정도의 역할 외에 전혀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현재 로스쿨 평가기준에 있는 취업률 공시 등을 위한 회신 과정에서도 학생들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굉장히 소극적일 때도 많고, 심지어 취업한 학생들에 대하여 취업기관이 평가하는 자료를 받고 이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더 큰 반발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개인적으로는 취업 정보 제공 등의 한정된 역할 외에 변호사가 아닌 법학전문석사생들을 위하여 로스쿨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와 관련하여 과연 어떠한 평가기준이 가능할지 선뜻 떠오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4. 마치며

오늘의 다양한 논의는 단순히 응시제한 제도를 유지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법학교육의 공공성과 개인의 삶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을 방지하지 말고 최소한의 균형점을 제도적으로 찾아가야 한다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논의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종합토론에서의 저의 의견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의견이 아닌, 현장에서 13년간 학생을 살펴본 교수의 입장이자, 현실적으로 변호사시험이 실질적인 자격시험으로 제도가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의견임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현재처럼 실질적인 자격시험으로 제도가 운영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법시험 제도 등을 거치며 익히 경험해 본 고시 낭인, 사회경제적 비용 매몰 등의 우려 등을 고려하면, 응시횟수 제한은 전문직 자격시험으로서 일정 부분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에도 충분한 근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선발시험 제로 운영되는 상황 하에서 응시기간까지 엄격히 제한하는 현행 구조는,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을 통한 법학교육이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입시학원으로 전락하지 않고, 양질의 법학적 소양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그 자격 취득 기회에도 합리성을 상실한 사실상의 제재가 존재하지 않고, 그 자격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법학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인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의 첫 걸음으로써 오늘 현장에서 직접 전해들은 응시제한자들의 목소리와 그에 대한 면밀한 검토의견들이 추후 제도개선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

토론

모두가 불행한 로스쿨

김정환 변호사
(법무법인 도담)



모두가 불행한 로스쿨

김정환 변호사*
(법무법인 도담)

1. [Titichia Jackson 교수님의 발제]는 우리 로스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예를 통해 압축적으로 보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Penn State Dickinson Law의 비전통적 경로가 전통이 되는 교육을 위해 필수적인 것은 ① 학위 자체의 독립된 가치와 ② 유연한 시험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생태계에서는 구조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변호사 자격증이 당장 없더라도 JD 학위 자체가 시장에서 전문성으로 존중받을 수 있고 또 변호사가 되지 않더라도 특별한 낙인의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로스쿨 학생들은 재학 기간 및 졸업 후 5년이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오직 자격증 취득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만을 강요받습니다. 만약 5년 내에 합격하지 못하면 법조계 진입 루트가 평생 영구 차단되는 사형 선고를 받기 때문에 학생들은 변호사 시험 합격 이전에 다른 ‘비전통적 진로’를 돌아볼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JD Advantage 직군은 한국에서 ‘미래지향적 리더십 경로’가 아니라 ‘시험 탈락자들의 차선책’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글로벌기업법(경희대)을 특성화로 공부하던 학생이 글로벌 스타트업을 창업할 수 있어야 하고 동북아법(전북대)을 공부하던 학생이 중국 박사과정을 강하게 희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로스쿨은 평생응시금지제도 때문에 특성화도 유연한 진로도 모두 불가능합니다. Penn State Dickinson Law의 졸업생 성공사례는 우리나라 현행 로스쿨 제도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로스쿨 재학 중 외무고시를 볼 수도 있고 여행가가 될 수도 있고 스타트업을 할 수도 있고 스포츠 에이전트를 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나에게서는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있다는 안도감이 있어야 그러한 진로가 가능합니다. ‘기회’가 막혀있는 로스쿨. 우리나라 로스쿨입니다.

1) 연세대 객원교수, 법학박사, 변호사(변시 7회) / 토론자는 2008년 로스쿨 인가 당시 조교로 근무하며 로스쿨 인가 서류 작업을 함께 하였기에 로스쿨 시작의 희망을 알고 있습니다. 2010년 연세대 연구교수로 리걸클리닉과 학생지도센터 운영 담당 행정을 하며 강의를 하였고 2014년 전북대 로스쿨 학생이 되어 1회 낙방 후 2018년 변시 합격하고 2018년 2학기부터 전북대, 건국대, 연세대에서 3학년 공법 수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생, 조교, 행정, 교수를 모두 담당해본 최종 경험을 ‘모두가 불행한 로스쿨’로 표현합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모두가 불행한 원인의 근본에 변호사시험법 제7조 평생응시금지제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김우석 변호사님의 발제]는 평생응시금지제도가 얼마나 졸속으로 도입되었는지 잘 보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숙의가 부족했다면 지금이라도 숙의해야하는데 이제는 모구 스톡홀름 신드롬에 걸려버렸습니다. 로스쿨은 입시준비생도 학생도 선생도 졸업생도 모두 불행한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집단도 불행하다를 외치지 못하고 불행에 익숙해짐을 행복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저 경쟁에서 이겨서 이 불행을 빠져나갈 생각만 합니다. 교수는 학생을 원망하고 학생은 교수를 원망하며 어느새 학생들은 ‘각자도생’이라는 사자성어로 머리를 채웁니다. 저도 수업시간에 기출문제만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할 뿐입니다. “지금은 이 지긋지긋한 경쟁때문에 나만을 위한 시험공부에 매진하는 시간이지만 이 시험의 끝에 얻을 직업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해야하는 직업이란다.” 저의 말은 공허하고 학생들은 기출문제 채점기준표에 밑줄을 긋습니다.

3. [우지숙 교수님의 발제]는 너무 늦었지만 꼭 필요한 연구였고 감사한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공익적·학문적 동기가 다른 학우들보다 강했다는 문장은 읽다가 눈을 멈추어야만 했습니다. 이 연구는 참 감사한 연구입니다. 결론으로 제시해주신 ① 매몰비용과 사회적 낭비의 중단 ② 법학교육 목표 재점검 필요는 두개를 모두 더하여 ③ 결론 : 평생응시금지제도 폐지로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제도는 사회적 낙인을 만들고 사람의 심리를 위축시킵니다. 변호사시험이 어렵다는 것은 오로지 로스쿨 학생들만이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친구들도 모르고 교수님들 눈에도 50%를 넘는 학력생들의 인사가 먼저 들어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는 제가 로스쿨을 졸업해서 ‘그냥’ 변호사가 된 줄 아는 사람들도 여럿입니다. 변호사 시험은 무인도에서의 처절한 생존같은 시험입니다. 누가 옆에서 격려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존하지 못한 탈락자는 삶의 의미도 희망도 잃어버립니다. ① 매몰비용과 사회적 낭비의 중단 ② 법학교육 목표 재점검 필요는 사회적 필요성 때문일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죽고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을 좀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오탈제도가 없다면 시험을 보지 않거나 1회만 보고도 마음 건강하게 석사학위를 자랑스러워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가 수없이 배출될 것입니다. 로스쿨 출신이 사회 곳곳에서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왜 변호사여야 합니까? 변호사 아니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는 낙인과 위축이 생기는 제도를 설계했을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4. [공두현 교수님의 발제]는 ‘어떠한 예상치 못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수 없는(10쪽)’ 수험생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두드러도 열리지 않는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에서 작년에는 이런 문장도 써 넣었습니다. “재판관님들께서는 변호사시험 수험생인 자녀가 암에 걸리면 너는 세상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건강이 중요하니 아무것

도 신경쓰지 말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치료에만 전념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험의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치료보다는 시험에 매진하라 하시겠습니까?”

앞에 걸려도 봉쇄 되어야 하는 현 제도를 너무 잘 짚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종적으로 제시한 대안구조(봉쇄해제)가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또한 1년에 200여명의 응시금지자가 나오기에 200여명의 문제라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다시 시험 준비해야하는 1900명 이상의 모든 학생들이 봉쇄효과에 빠져있다는 점도 반드시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이재협 교수님의 발제]는 <JD Disadvantage>라는 용어만으로도 이 제도의 본질을 보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로스쿨 졸업 후 변시불합격은 그야말로 ‘불완전 신호’(8쪽)가 되어버립니다. 비법률가 JD careertrack은 우리나라 로스쿨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어느학교에서 어느 교수님들과 어느 로스쿨행정영역이 평생응시금지자를 챙겨줄 수 있을까요? JD Advantage는 이 제도의 폐지 전에는 불가능한 단어입니다.

6. 기본권은 다른 말로는 ‘기회’입니다.

한 사람이 가진 기회는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누군가에게 그 기회를 빼앗는 것은 정체성을 빼앗는 것입니다. 기회는 자유이고 권리이며 정체성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기회를 확장시키는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기회를 빼앗긴 사람은 자유를 빼앗긴 것이고 권리를 빼앗긴 것이고 정체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부를 수 있는 기회의 박탈입니다. 이미 여러 학생들이 죽음을 선택하였습니다. 자신이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로스쿨을 졸업하며 변호사시험을 바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프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잠시 쉬었다 갈 수도 있어야 합니다. 임신을 하면 축복을 받으며 아이와 자신의 건강을 돌보았다가 다시 시험공부를 할 수도 있어야합니다. 기회를 강제로 빼앗겨서는 안됩니다. 강제로 정체성을 잃고 바라던 기회를 평생 잃게 되는 그 누군가를 자꾸 만들어 내는 이 제도는 위험입니다. 그 어떤 헌법이론으로도 위험입니다.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과잉금지원칙 위배 등)

위헌을 바로잡는 역할은 헌법재판소만 하는게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국회와 행정부가 할 일이며 모든 국가기관이 해야할 일입니다. 모든 로스쿨이 푹푹뭉쳐 이 제도를 폐지하고 합격률 상승을 이끌어내야 하지만..... 올해도 각 로스쿨은 자신들의 합격률을 자랑하거나 감추기에 바쁩니다. 그러면서 모든 로스쿨이 서서히 붕괴하고 있습니다(특성화 붕괴, 법학교육 붕괴, 사제지간 붕괴, 동료관계 붕괴, 로스쿨에 대한 사회적 신뢰 붕괴 등). 제도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닐까요?

토론

당사자의 시각에서 바라 본 응시금지자의 삶 및 법조계 현황분석

양필구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자



2026. 6. 9.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주최 '법학교육의 미래와 비전' 토론회 토론문

당사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응시금자자의 삶 및 법조계 현황분석

양필구

fillbox@naver.com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사무총장
변호사시험 오탈자(응시금지자)

010-7589-5244

1 토론자 소개

양필구 변호사시험 오탈자(응시금지자)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사무총장

로스쿨을 졸업하고 응시기회(5년 5회)를 전부 사용했으나 변호사시험에 합격
하지 못한 소위 말하는 '오탈자'

대한민국의 법조인양성제도의 문제점 개선 및 시민들의 법률서비스문턱을 낮
추자는 취지로 설립된 시민단체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사무총장

제도개선을 위한 집회 및 법조인양성 관련 연구자료들을 언론을 통해 꾸준히
발표하고 있음



감사 인사 - 당사자 중 한명으로서

2 감사 인사 - 이탈자(응시금지자)에 대한 심층 분석의 필요성

응시금지자들의 특성 상 다수의 샘플을 확보한 연구가 매우 어려움

샘플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공신력 확보는 더 어려움

응시금지자 문제는 '아픈손가락' 혹은 제도의 부작용처럼 인식되어 지금까지 외면받아옴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개선방향에 대한 여러 의견이 공존하며 상충하고 있음

법전협의 이번 연구가 제도 개선 및 현실직시의 출발점

이런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 법전협의 이번 연구가 향후 개선방향 도출에 전환점이 될 것임

응시금지자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표함

2 감사 인사 - 오탈자(응시금지자)들이 관련 연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오탈자(응시금지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법전협 차원의 지원은 제도의 정당성 문제와 별개

오탈자(응시금지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당사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법전협 혹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당사자들이 제도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

다만 제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기반에서 이런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신이 만연한 것은 분명한 현실임

하지만 제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가부와 관계없이 현실에 대한 심층적 조사와 당사자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 구체적 실행을 '제도에 대한 승인' 혹은 '현실에 대한 타협'등으로 날 서게 비판(더 나아가 비난)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 생각(개인적 견해)

3 한국의 변호사시험 제도와 응시제한제도 관련 쟁점 - 관련첨언

제도에서 예상했던 오탈자 숫자는 과연 몇명일까?



응시금지자의 증가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선정이 필요함

현 응시금지자 수(총 2천명 이상, 매해 2백명 이상 발생)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기 위해서는

본래 제도 설계 당시 예상했던 응시금지자 숫자가 몇 명인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

3 한국의 변호사시험 제도와 응시제한제도 관련 쟁점 - 관련참언

의대와 법학전문대학원의 5수 이상 분포 비교

의대와 법학전문대학원은 몇몇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큰 공통점이 있음

법전원 설립 당시에도 의대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해 여러 보도자료들이 나왔음

네이버 '김재원 의사국사' 키워드로 검색하면 관련 기사 다수 검색 가능

4 응시제한자, 그들은 누구인가 - 관련참언 1.

졸업 후 직업 및 고용 현황 관련

응시금지자(오탈자)의 경우 첫 취업에 극심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시험 낙방 후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응시금지자들에게 법전원 졸업은 + 요소가 아니라 극심한 -요소에 불과함

토론자의 경우에도 법전원 졸업자 출신임을 이력에 기재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취업 합격률이 증가함

-법전원 졸업이라는 전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다는 것은 법전원 관련자들'만'의 생각임

일반인의 인식에 '법전원 졸업'의 전문성은 자격증 취득으로 입증하는 것임

-응시금지자(오탈자)들의 공공기관 진출 지원책이 응시금지자들에게 특혜를 부여한다는 오해를 일반인들, 특히 해당 분야에 취업하려는 사람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응시금지자들이 '석사'이상 지원가능한 분야에 대학원 졸업자로서 전문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개선이 반드시 필요함

4 응시제한자, 그들은 누구인가 - 관련첨언 2.

본인 인생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임

법전원 졸업자로서 시험에 합격한 자, 시험에 불합격한 자 모두 본인 인생은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것임

- 법전원은 교육기관으로서 졸업자들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소양을 갖추게 하는 것이 기관의 주 목적임
- 졸업 후 취업을 어떻게 하는지, 삶을 어떻게 개척해야 하는 것인지는 궁극적으로 본인의 과제임

다만 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이 어떠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어필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님

- 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교육기관인 법전원의 도움이 절실한 부분임
- 응시금지자들이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의지' 또는 '많은 나이'를 넘어서 응시금지자 자체를 바라보는 사회적 낙인임

➡ 법전원을 졸업한 사람들도 다른 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선상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인식개선이 필요함, +가 아닌 ZERO BASE가 필요함

4 응시제한자, 그들은 누구인가 - 관련첨언 3.

응시금지자 VS 합격자 소득분석 관련(국가통계포털기준)

해당 연구에서는 응시제한자와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소득차이를 5,975 VS 11,504로 단순 비교함

- 그러나 해당 연구자료에서 알 수 있듯 응시금지자들의 60%이상은 40대인 반면 합격자는 30대임
- 연령, 상황에 따른 심화된 비교를 할 필요가 있음

응시금지자 소득 관련 심층분석의 필요성

- 대한민국 40대의 평균소득은 6,528(월 544)만원임, 응시금지자 5,975(월 497)만원은 평균 이하임
- 대학원 졸업자의 평균임금은 대학 졸업자의 1.43배, 이 점을 고려하면 응시금지자 소득은 저소득층에 해당

변호사시험 합격자 소득분석

-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대다수가 30대임, 30대 평균소득은 397만원(변호사 평균소득 11,504만원의 40%수준에 불과) 대학원자 평균소득(1.43배)를 곱하면 나오는 수치인 6,812만원도 변호사 평균소득의 절반수준

➡ 연령, 학력별 상황을 고려하면 실질 차이는 3배 이상으로 추정됨

4 변호사 소득에 대해

국세청 부가가치세 납부(2025년)기준
개인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매출

9조5970억5천만원(2024년 대비 10.02%증가)
2025년 변호사 수 37,981명

VS

통계 및 국세신고 시 변호사가 자발적으로 언급하는
소득평균은 1억 1천 ~ 2천 사이

-변호사 1인 소득
2억5368만원

국세청 부가가치세 납부기준에 따를 때 소득 격차는 5배 이상
-응시제한자와 합격자 사이 소득격차는 극심함

5 변호사시험의 폐쇄적 구조와 유예된 삶의 문제

응시금지와 관련된 여러 해결방안, 그것은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다

응시금지제도의 해결방안에 대해 다양한 담론이 이야기되고 있음

-5년 5회를 그냥 5회로 완화해야 한다, 제도 자체를 타파해야 한다 등 다양한 담론이 나오고 있음

그 가운데 공통사항은 이 제도가 극심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임

- 금일 심포지엄 참가자 중 응시금지제도의 해결과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에 반대하는 사람은 극소수임

과정의 차이를 결과에 대한 차이로 인식하여 서로를 공격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됨

- 세상에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없음, 그리고 문제의 해결방안이 다르다 하여 그것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됨. 또 응시제한 중 일부 문제 해결이 전체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것임을 인지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

➡ 다만 응시금지제도의 유지를 통해 합격률을 통제하려는 시도, 또는 제도외적 법조인 선발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배격이 필요함

6 한국의 법학교육과 법조인력 양성체계의 명암 : JD Advantage를 중심으로 - 관련첨언

한국 JD Advantage의 의의와 한계

외국 JD ADVANTAGE와 한국 JD ADVANTAGE의 차이점

-외국에서 JD ADVANTAGE가 인정되는 대전제는 변호사시험에 반드시 응시할 필요가 없다는 사회적 인식 + 합격률을 통제하지 않는 국가 기조가 전제

한국의 경우 합격률을 통제하려는 집단이 이 부분을 선점해 악용함으로써 상황이 극도로 악화됨

- 응시금지관련 논의가 한창이던 당시 변호사가 안 된 사람도 석사 학위를 활용해 취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합격률을 통제하려는 집단에서 언급하면서, 해당 내용에 대한 적개심이 당사자들 사이에 극도로 상승함

비법률가 JD에 대한 전문성 및 법학교육의 가치를 사회에 알리고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임

- 다만 로스쿨 설계 당시 우리나라에 법조인을 한해 2천명을 공급하겠다는 사회적 합의(법조인집단은 제외)를 대전제로 출발한 것임, 응시금지자 규모는 앞서 언급한 것 처럼 한해 10명 내외만 발생했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잘못된 제도운영으로 대규모 응시금지자가 발생해 지금의 이 사달이 발생한 것임

6 한국의 법학교육과 법조인력 양성체계의 명암 : JD Advantage를 중심으로 - 관련첨언

법전원은 변호사 양성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 맞다

정원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한국 로스쿨은 변호사(WITH 판사, 검사)를 양성하는 기관이 맞다

-합격률 및 입학정원을 통제하지 않은 외국 로스쿨의 경우 JD Advantage가 존재할 수 있으나, 합격률과 입학정원을 통제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JD Advantage는 결국 합격률 현실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따라올 수 밖에 없음

해당 연구의 진정성을 단 1도 의심하지 않음, 그리고 JD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의 활용방안 논의가 필요함

- 다만 해당 논의는 제도 정상화(변호사집단이 제도에 관여하기 이전상태)를 위한 과도기적 과정으로서 필요한 것이지 이 현황을 고착화 시키는 것으로 보여서는 안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시금지자에 대한 낙인 제거, 제도개선이 쉽지 않은 현실속에서 JD Advantage를 통한 제도의 파행적 운영에 따른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은 분명함

토론자 양필구 발표문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토론

변호사시험 제도의 실행과 응시제한자의 경험을 통해 본 법학교육의 미래와 비전

이동근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MEMO

토론

변호사시험 제도의 실행과 응시제한자의 경험을 통해 본 법학교육의 미래와 비전

김수연

교육부 대학학사운영과 사무관



MEMO

**변호사시험 제도의 실행과
응시제한자의 경험을 통해 본
법학교육의 미래와 비전**